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탐당

|| 일시 || 2006. 9. 29.(금) 14:00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일 정 표

전체 진행 : 김철홍 (학교교육팀장)

여는 마당

- 개회 선언
- 인사말씀 (5분) :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
- 참석자 상호인사 (10분)

꿈 찾는 마당

- 모듬활동(30분) :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비전 세우기

토론 마당

- 기본발제 (20분) : 배 경 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단체 (각 10분) : 유 윤 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 진 숙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학부모단체 (각 10분) : 윤 지 희 (교육과 시민사회)
박홍나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교원단체 (각 10분) : 현 원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백 복 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단체 (10분) : 권 혜 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 전문가 (각 10분) : 이 수 광 (이우학교)
유 성 상 (한국교육개발원)
-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50분)

모으는 마당

- 모듬활동(30분)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마무리 마당

목 차

■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배경내)	3
■ 학생인권, 학교 현장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켜라 (유윤종)	25
■ 차별 강제보충은 이제 그만, 학생에게 참여와 자치를 (김진숙) ...	29
■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윤지희)	33
■ 학부모와 함께 풀어나가는 청소년인권이야기 (박홍나미)	41
■ 학생인권과 학교 (현원일)	51
■ 학생인권, 교권과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하여 (백복순)	53
■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와 대안 (권혜진)	61
■ 인권친화적 학교표준 설정의 상상력 (이수광)	71
■ 중등학생 인권 실태와 인권지침 방안 (유성상)	77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83



기본발제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배 경 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0. 들어가며

올해 들어 학생 인권과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른바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급식을 3교대로 돌리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빨리 밥을 먹도록 하고 그렇게 못한 학생들에게 벌로 청소를 시키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키는 교사의 지도방식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이 줄을 이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학생 인권에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에게 열악한 조건의 감수를 강요하는 데서 나아가 아무리 잘못된 지도방식이라고 해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교권의 문제가 이 같은 문제를 나온 근본 원인이다.

무엇보다 학생 인권을 폭발적 의제로 등장시킨 계기는 지난 6월 군산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부터이다. 이윽고 방학 중인 8월 14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벌 200대’ 사건이 터지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타올랐다. 이 학교 박모 교사는 3학년 학생이 5분 정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200여 대를 때리는 폭력을 자행했고, 같은 학교 3명의 학생도 지각을 이유로 매타작을 당했다. 언론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들 학생들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7시 45분까지 등교해야 했었고, 이로부터 강제 보충수업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불과 몇 일전인 9월 25일에는 진주의 한 중학교 학생부장 교사가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 앞 매점에서 군것질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린 뒤 체벌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학생 인권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제기하는 청소년들의 저항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학교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일어났다. 학교측은 학생 시위를 강제 해산한 데 이어 ‘주동자’ 징계에 돌입했고, 청소년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다 다시금 두발단속은 강화되어 7월 19일 학생들의 2차 시위가 준비되었으나, 교사들의 원천 봉쇄로 무산되기에 이른다. 이날 시위 계획을 알고 학교를 방문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교문 앞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5월 8일에는 서울 동성고등학교 오병헌 학생이 두발자유, 체벌 금지, 강제보충수업0교시

폐지, 교회 집회 참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교문 앞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오병현 학생에게는 재심까지 거쳐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가 결정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오병현 학생은 정당성 없는 두발규정에 기반한 징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수원 청명고에서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사전에 이를 눈치챈 교사들에 의한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 통행 제한, 퇴학 위협 등으로 인해 시위가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학교측은 언론과 인터뷰한 학생들을 찾겠다며 핸드폰까지 압수하고 통화·문자기록을 열람하기도 했고 밀고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9월 6일 청명고 앞을 찾아가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학생인권사진전’을 연 데 이어, 이 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지난 5월 광화문에서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행사를 연 데 이어 8월에는 전국 7개 도시를 찾아가 캠페인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행진’을 열기도 했다. 7월말 교육·청소년단체들이 연 대해 발족시킨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8월 3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서는 등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9월 16일 학생인권 촛불문화제를 이어서 열어 학생인권법안의 통과에 지속적인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의 대책은 굵뜨다. 대구에서 일어난 체벌 200대 사건이 여론의 반향을 크게 일으키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벌을 둘러싼 팽팽한 찬반 대립을 이유로 실제 법 개정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한 교육부는 9월 1일 총 7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을 계기로 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으나, 학생인권 관련 종합적 대책 마련보다 ‘학교폭력’(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에 치우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 관련 일반적 인식 수준도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바람에 비해서는 현저히 미달한다. 학생 체벌 문제가 연거푸 터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영암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전교생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교장에게 ‘사랑의 매’ 전달식을 갖기도 했다. 체벌금지 여론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동요’를 가라앉히려는 일종의 대항 의식(儀式)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8월 28일 대구에서 또다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이른바 ‘목덜미 체벌 사건’)과 관련, 지각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한 학생 중 하나가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일부 학생이 나서 교사 처벌을 반대하고 해당 교사에게 ‘힘내세요’라는 응원문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 체벌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체벌금지법 법제화 추진 방침이 보도되

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09명 가운데 2944명인 8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폭력적 사건이 연거푸 터져 나오고 학생들의 주체적 저항도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뚜렷한 방침은 확립되지 못했다. 학생 인권 이슈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은 학생들로부터 정당성과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어린이·청소년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생 인권의 현주소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오랫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군림해 온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이 글이 학생 신분의 청소년들 가운데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인권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어린이·청소년의 위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에서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은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위해 바로 지금,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보편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재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얼마나 허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당한 채, 다른 누군가의 권력에 종속된 삶을 살아간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인 개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도, 흔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뒤늦게 등장한 권리 주체 중 하나로 일

떨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의 주체’로, ‘복지 시책의 대상’에서 ‘정의로움(justice)을 요구하는 주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 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서야 채택되었다. ‘보호에서 자율로’의 변화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이 낳은 열매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보호주의에 머물러 있다.¹⁾

사회운동의 영역을 돌아보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주변부적 위치는 여전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일반적 조건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타인에 의해 대변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인권의 보편성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상의 전쟁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여성운동, 흑인운동, 노동운동, 선주민운동, 장애인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동성애자운동 등으로 스스로를 조직하여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다른 운동의 주변부에 끼어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나, 인권의 주체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관심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가족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존재로, 기존의 사회규범을 따라야 할 존재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할 때에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비로운 성인’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다. 반대로 이러한 ‘주어진 위치’를 거부하는 ‘위험한 아이들’에겐 통제와 억압이 따라붙는다.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욕구는 쉽게 묵살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닌 만큼, 그들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의 세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저서는 안될 경험이 존재하며, 그들이 드나들어서는 안될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들과 국가가 허용한 공간-주로는 가족과 학교-과 삶의 경험 아래 유폐된 존재가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유폐’는 그들의 무지와 무권력 상태를 강화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다시금 그들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당한 채 학교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 하에서 학교당국과 학생, 교사와

1) 최초의 국제적 아동인권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의 전반적 기초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아동관’에 기초해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도 보호주의적 잔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질료일 텐데, 학교는 오히려 폭력과 부조리와 권력에 굴종하는 순종적 삶의 태도를 '학생다움'으로 교육함으로써 반인권의 질서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문제에 비해 '학생인권' 문제를 극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폭력을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에 한정하고 있는 것부터가 불평등하다. 교육부는 특별대책팀까지 만들어 학교폭력 소탕 작전에 나섰지만, 이 학교폭력이야말로 학교를 포함하여 사회가 제시하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모델과 문화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눈에 안 보이는” 폭력에 대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택하기보다 일제 단속,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 설치 등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감시 위주의 대책은 감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 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과도 무관하여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2. 학생 인권의 현주소 - 인권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학교

1) 국제인권기준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1989년 11월 20일 역사적으로 탄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현재, 유엔이 채택한 여러 인권조약 가운데 191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인과 다름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 어린이기와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이므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권리 내용으로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권과 정당한 비중의 부여(12조) △표현의 자유(13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4조) △집회, 결사의 자유(15조) △사생활, 명예, 신망을 보호받을 권리(16조) △어린이·청소년의 존엄성과 협약에 부합하는 학교규율(28조) 등이 있다.

특히 이 협약은 '아동권리위원회'라는 조약이행기구를 설치하여 각국의 이행 상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 최종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권고 내용 중 학생 인권 관련 내용으로는 △교사, 법집행 공무원 등 어린이·청소년 가까이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협약 내용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국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어린이·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는 점 △학교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 △학교에서 차별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차별 금지를 위한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이고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의 무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²⁾

이러한 권고 내용은 민간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학생인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온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인권단체들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함으로써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계속해서 내모는 결과를 양산해 왔다. 2003년 마지막 권고가 있었던 해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변화를 촉구한 부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수호 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북학생인권백서>를 함께 내놓았다. 백서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학생의 두발불량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5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염색을 포함한 두발자유(85.7%) △보충·자율학습 폐지(55.8%)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50.1%)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에 대해서는 △언어폭력(44.0%) △성적으로 무시(37.1%) △차별(31.9%) 등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의 남녀 중고생 2910명을 상대로 벌인 <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이다. 학생들은 △탈의실 부재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1차 권고는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을여는책, 1997)에 전문이 수록돼 있으며, 2차 권고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전문이 공개돼 있다.

(81.0%) △잡은 두발규제(62.4%)³⁾ △좁은 교복 선택 폭(61.1%)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 금지(61.1%) △질 낮은 학교급식(53.4%) △강제적인 0교시와 보충수업(49.7%) △처벌시 변론권 미부여(41.9%) 등의 문제를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인권침해로 답했다. 그 밖에 △성적 차별(29.6%) △인신공격성 폭언(20.1%) △성적을 이유로 한 잡은 체벌(13.6%) △손찌검(25.0%)을 당한 경험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최근 몇 해 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수준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 교문 앞에 멈춰선 인권

① 학교규율과 인권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식의 입시 문화, 그리고 ‘순종 천국, 반항 지옥’의 권위주의적 통제질서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강제적인 보충·야간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다움’을 규정한 학교생활규정, 교사 재량행위 등을 통해 일상적 검열과 통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가 교문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이다. 입시만을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뺑뺑이’ 돌리는 데 열을 올리는 학교일수록 학생 인권이 시궁창을 굴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⁴⁾

학교에서 강제되는 규율은 학생 본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해야 할 공부를 소홀히 하는 행위, 교사의 가치관에 비해 무례한 태도, ‘그분들’ 보시기에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하면 좋은 것(공부 외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 단정한 옷차림과 자세)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이를 상벌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아이들의 행동을 규격화·표준화·획일화시킨다. 학교의 경직된 규율과 질서로부터의 이탈은 곧바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일상적 통제를 통해 학교는 순종적이고 동질화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⁵⁾

오랫동안의 법적·교육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체벌과 일차려는 여전히 일시적 통제효과를 달성하고 학교규율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

3) 만약 조사 문항이 ‘잡은 두발규제’가 아니라 ‘두발규제’였다면 더 높은 응답 비율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4) 2004년 사학재단의 학생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수업거부까지 이어져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인천외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와 학생 인권, 나아가 교사들의 자주적 교육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 교칙의 학생 통제적 성격에 관한 분석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2001.10)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또한 공부에 전념하라는 자극을 준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공개, 성적에 따른 임원 후보 자격 제한, 교문 앞 등교지도, 불시의 소지품검사, 속옷검사, 두발검사 등 일상화된 검열과 통제를 통해 학생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의 권리, '몸'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소지품검사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일 뿐 아니라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

이러한 검열과 통제의 과정은 흔히 아동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한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소극적·적극적 저항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 규율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2차 폭력이 가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② 징계와 인권

단순한 체벌이나 벌점, 교내봉사활동에서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내 징계는 인권 보장을 요구한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4년 4월 부산해사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두발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저항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하여 교실에 돌렸다가 퇴학처분을 당한 바 있고, 올 5월 교문앞 1인시위에 나섰던 동성고 오병현 학생에 대해 학교측은 '허락 받지 않은 사실 유포'와 '학생 선동과 질서 문란' 등이 포함된 총 5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하려 했다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앞의 2가지 징계 사유를 슬그머니 빼고 두발규정 불이행 등만 들어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변론권과 재심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18조 2항에서는 징계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어 학생의 변론권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학생의 의견 진술은 학생부실에서 강제로 작성을 강요받는 진술서와 반성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징계(선도)위원회 개최 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가 참석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보장하지 않기도 한다. 소선도위원회는 아예 아무런 절차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학습권까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징계가 적법절차의 권리마저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③ 의사표현, 학교운영 참여와 인권

위와 같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규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규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나 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아직도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듯 학생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칙제·개정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들의 참여는 원천 배제하고 있다. 학생회가 단지 학교의 결정을 전달하는 유명무실한 시녀기구로 전락해 있는 학교들도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어용 학생회'가 학생들의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학교도 적지 않다.

0교시,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를 아예 무시한 채 일괄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보충·야자에서 빠지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도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의사를 고려한다.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나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교내 언론활동과 집회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校誌)나 학교신문, 자발적으로 만든 유인물,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매체를 통해 알리게 될 경우 불만이 확산되거나 학교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통제 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3년 용화여고의 허성혜 학생이 학교의 비리를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까지 당했던 사건이나 2005년 9월 김제서고 1학년 이아무개 학생이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퇴학시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성고 오병현 학생에 대한 보복성 징계 시도는 물론이고, 최근 서울의 모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부장이 두발자유 버튼을 달았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징계처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입을 막기 위해 징계 위협을 들먹이는 학교들도 많다. 용의복장규정을 고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이 학생부실에 끌려가 '조용히 자퇴할래? 아니면 퇴학당할래?'라는 선택을 강요받은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반성문을 쓰면 한번 봐주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면 강제 전학 아니면 퇴학이다. 0교시 강제수업이나 비리 의혹 등이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가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고발자 색출 작업'이다. 불만이 있더라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곳이 바로 학교인 셈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합적 의사표현도 제대로 보장될 리 없다. 학교는 학생들의 집합적 의사표현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원천 금지하고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양동중, 청명고에서처럼 학내 시위를 주

또한 학생들은 외부에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감시와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면키 어렵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가 학교장의 허락없이 학교 밖 집회나 행사에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칙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학교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여까지 배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알아서 입조심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참여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교장 한 마디로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청 행사나 학교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활동이 강제로 정해져도 학교는 조용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행사 내용이나 일정이 통보돼도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학급회의 시간이 시간표에만 있는 유행시간이 된 지 오래이지만, 아무도 학급회의 한번 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뭔가 불만이 있더라도 '뒷담화를 까는' 정도에 그칠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그렇게 학생들은 '침묵의 문화', '체념의 문화'에 익숙해진다.

④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종교계 사립학교에 의해 강요되는 종교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1인시위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강제 종교교육 폐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이 지난 2005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종교재단 설립학교 가운데 특정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의 92%(38개교 중 35개교), 고등학교의 86%(64개교 중 55개교)에 달했다. 종교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편성하라는 교육부지침(교육부고시 제1997-15호)을 어긴 학교 역시 중학교 50%, 고등학교 33%에 이르렀다. 종교의식 참여나 종교과목 수강에 대해 학생 동의를 얻는 과정이 요식절차에 불과하거나 이마저도 거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인 상태이다. 대광고등학교만 해도 종교예배 강요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1인시위에 나선 강의석 학생을 퇴학처분하는 등⁶⁾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하다 결국 예배선택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강의석 학생이 졸업한 이후 여전히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재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사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나아가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 받기도 하며, 이를 거부한 학생들은 아예 입학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2003년 말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임을 밝힌 이 학교 지원 학생이 건전하지 못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그 학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상숭배라며 거부하였다)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교나 사상적 양심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없

6) 이후 강의석 씨는 법원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학교에 복귀했다.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3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가 국가관에 대한 가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학내 종교·사상의 자유 수준을 짐작할 만하다.⁷⁾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강요되는 반성문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물론 자기 성찰을 위한 과정으로서 글쓰기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강요되는 반성문은 개인의 신념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심판자(학교당국과 대항자로서의 교사)가 따로 있고,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도 심판자의 몫이다. 반성문을 잘 써야 처벌을 피하고 심판자의 용서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반성문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쓰는 성찰의 편지가 아니라, 권력자에게 쓰는 굴복의 문서인 셈이다. 소통과 주체적 깨달음은 교육의 과정일 수 있지만, 선처를 미끼로 내던져진 반성문은 심판자의 의지를 강요하는 반인권적 처벌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관행처럼 행해지는 반성문 쓰기를 예민한 인권의 시선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3.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1) 두발자율과 두발자유

두발규제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당국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규제를 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에서 있었던 ‘Massie v. Henry 사건’(1972)에서도 재판부는 “두발의 길이가 건강이나 타학생에 대한 안전이나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발의 길이에 대한 학교의 규칙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해 입증책임이 학교측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당국은 한 번도 두발규제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만큼 명백하고 필수적인 근거를 가진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직도 학교는 ‘학생다움’(여학생의 경우 ‘여자다움’이라는 기준이 추가된다)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 학습분위기 조성⁸⁾과 비행 예방의 필요성 등을 앞세워 두발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두발규정이 다른 현실은 ‘학생다움’의 기준이 그만큼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방증

7) 반면 미 연방대법원은 1943년 ‘윌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어떤 관리도 정치, 조국애, 종교, 또는 기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주법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다. 머리가 길거나 머리모양이 제각각이면 학습분위기가 나빠지고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믿음은 한 번도 증명되지 못한 ‘미신’에 불과하다. 두발단속에 의지해서 학생들을 ‘잡겠다’는 발상은 학교교육의 ‘자신없음과 실패’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령 두발규제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두발규정의 집행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합한 수단과 과도하지 않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나 손가락으로 머리길이를 재든, 바리깡이나 가위로 머리를 자르든 간에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자아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5년 6월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특히 강제 이발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⁸⁾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왜지 두발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근거없는 불안감에 교육적 상상력과 관계맺음의 가능성을 저당잡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리깡의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있다. 두발규제는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칙을 만들고 언제든 학생들의 몸을 침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시킨다. 두발규제를 통한 몸에 대한 통제는 정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다.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시대 가혹한 체벌과 두발규제, 군대식 훈련을 통해 충실한 ‘국민’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를 대학에만 보내준다면 더 엄격한 두발규정도 감수하겠습니다”라며 기꺼이 자신의 인권을 반납하고 동료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학생들의 존재야말로 두발규제의 반교육적, 반인권적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그러하기에 두발자유 외침은 외모 가꾸기에만 온통 신경이 가있는 ‘철부지들의 투정’이 아니라 교육의 식탁에 평등하게 둘러앉고 싶은 ‘억눌린 자들의 인권 외침’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자율로 정하되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는 정도⁹⁾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두발제한의 내용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학생단체도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두발규정을 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두발자율론’이다. 이러한 입장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내몰려 있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교 단위에서 결코 학생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좀더 본질적인 문제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8)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2006.6.27)

9) 교육부는 2000년 ‘노컷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도, 올해 ‘200대 체벌’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8월 28일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두발이나 교복 등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입증되지 않은 두발규제를 과연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가에 있다. 곧 학생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다른 학생의 두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인권은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는 이유로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칙은 다수결이 아니라, 학생인권기준을 충족시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 비교육적 차별, 과잉차별만이 문제인가?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온 차별 사건을 대하는 언론과 일반의 태도는 ‘과잉’ 차별, ‘비교육적’ 차별을 문제삼는 방식이다.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손찌검을 하거나 수백 대, 수백 대를 때리는 것은 문제라는 식이다. 대부분의 차별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비교육적’ 차별, ‘감정적’ 차별, ‘과잉’ 차별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구분은 차별의 본질을 가리는 효과를 낳는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는 교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교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사랑의 때’를 들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사제관계에서 있어서는 안될 ‘패륜’, ‘폭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물리적 힘은 ‘차별’, ‘사랑의 때’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사제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식된다. 결국 차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집단(교사)이 다른 집단(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행사, 곧 폭력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차별의 과정에서는 학생을 모욕하는 언어폭력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수백 대를 때려서(차별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 발길질이나 손찌검을 해서(차별의 방식)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대로도 학생의 존엄성은 훼손되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차별교사를 고소하더라도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이내 소를 취하하거나(교사를 법정에서 세운 학생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법정까지 갔더라도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요즘엔 학생을 함부로 때리는 간 큰 교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차별도 함부로 못하니까 애들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차별이 실제 줄어들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개는 모든 형태와 수준의 차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기 보다는 심하게 때리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심하게 때리는 교사가 소수라고 해서 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봐야 할까? 더구나 한 교사의 ‘지도방식’에 동료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불문율이고 실제 차별 현장에는 학생들 이외에는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과도한’ 차별이 일어나더라도 현장에서 그 교사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게다가 심한 차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공개되고 학부모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다면, 학교와 교육청 역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도리어 피해학생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차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교사 개인의 ‘재량’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품성’에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맡겨두는 법은 없다. 모든 남편이 폭력남편이기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모가 폭력부모여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찰과 교도관이 폭력경찰, 폭력교도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독직폭행 금지 법률이 있는 게 아니다. 가족 안의 권력구조, 법집행 공무원과 시민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폭력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교육을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교육여건이 교사들을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게 만드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체벌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조건만 바꾼다고 해서 체벌이 사라지는 않는다. 체벌은 구조의 결과만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이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에게 ‘맞을 짓을 하면 때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 ‘우리 학교엔 체벌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학생들이 다시금 두발규정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되물어보면 ‘맞는다’고 답한다. 약한 체벌은 체벌로도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재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며 교사에게 체벌을 주문하기까지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낸다. 체벌의 가장 나쁜 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폭력’ 이외의 다른 관계맺기와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앗아가버리는 것, 폭력에 저항하는 힘과 삶의 능동성을 빼앗는 것 말이다.

3) 교사-학부모-학생의 동등한 의견 반영이 해법인가?

교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교는 교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 개정 시기에 대해 물어보면 학생 불만이 있을 때마다 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대답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나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다음 개정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몇 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 사이 학생들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계가 따라붙는다.

지난해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뜨거워지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강제 이발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강제로 생활지도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올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확인한 교육부 방침 역시, 교육3주체론을 저변에 깔고 있는 대책이다.

이른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논리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동등

한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교육3주체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사뭇 민주적인 방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앙시앵레짐 말기 특권의 유지를 위해 소집된 삼부회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학교 교칙을 통해 인권을 빼앗기는 이들은 학생인데, 학교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입시 위주의 통제'를 유지하는 데 관심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같은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불평등이 아니다. 교육3주체의 의견을 동등한 비율로 반영하다 보면 학생 다수의 의견보다 낮은 수위로 규정이 개정되기 마련이다.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억압을 경험하지 못한 남성과 비장애인의 의견을 동등한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교칙을 다룰 때는 어김없이 '교육3주체'론이 등장한다. 더구나 학생회 임원들의 의사를 학교가 적극 조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형식적인 참가만 보장함으로써, 학생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규정으로 위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학교 현실이다.

4)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될 행위인가?

최근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위는 곧 강제 해산되고 주도한 학생은 징계 위협에 내몰린다. 대다수 학교가 학생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중징계 대상으로 규정한 교칙조항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외치며 학내시위를 벌였던 양동중학교 학생들도 징계 위협에 놓였고, 8월말 학내시위를 벌였던 수원 청명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계 위협이 있었다. 실제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자퇴서나 반성문을 받아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전에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들의 학내시위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식된다. 학생들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통제 위주의 사고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도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더군다나 학교의 권력관계 하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몇몇 학생이 나서 학교를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학생회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모여서 외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집단행동'의 자유는 학생들이 부당한 학교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더더욱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학생회를 통한 건의만이 민주적이라는 사고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로만 좁혀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애써 외면한다. 학생들의 집합적 행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5) 학교는 사적 왕국인가?

학교는 외부의 비판과 직접행동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것 또한 철저하게 불온시한다. 학교 안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개입은 '외부단체에 의한 학생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가져다 붙인다. 교문 앞 규탄 기자회견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학교 안 항의방문은 '사유지 침해'로 인식한다. 교육당국 역시 교칙 문제는 단위학교의 '재량사항'이라는 말로 그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최소화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반응들은 노동자들의 집회나 파업에 대해 걸핏하면 '업무방해'죄를 들이대는 기업의 횡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제지하는 이에게 '남의 가정사에 왜 감 놔라 배 놔라'라며 눈을 부라리는 남성 가장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아니 적어도 회사와 가족이 제3자 개입을 불허하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노동법상 '제3자 개입 금지'라는 악덕조항은 이미 사라졌고, 아내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한 개입은 법적으로 적극 권장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가, 여성과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가의 문제가 한 기업 구성원, 한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님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견줘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인식은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 학교는 외부의 개입에 대해 여전히 철의 장벽을 세우고 있고 '사적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사립의 구분도 없고, 교육당국에는 이 철의 장벽을 해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학교'의 문제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인식, 곧 '공적 의제'를 '사적 의제'로 전화시키는 인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밀에 부쳐서라도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학생인권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교 담장 넘어 '사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강고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학교의 문제를 공적 의제로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자 개입금지론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성역을 구축해온 학교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6) 학생 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학생인권과 관련한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추락하는 교권'을 다룬 기사들이 뒤를 잇는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 '학생에게 얻어맞은 교사', '무릎 꿇은 교권', '체벌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등의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학생 인권 문제에 교사단체들이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데에도 학생 인권을 보장할수록 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권’(敎權)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통용되는 교권이라는 말 속에는 교사의 인권, 전문노동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권위라는 말이 뒤섞여 있다. 이들을 분리 해체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교권’과 학생 인권이 반비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우선 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도 그들의 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는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학교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고, 학부모나 교장이나 동료 교사에게 의해 폭력을 당한다면 당연히 피해 교사의 ‘인권’이 부정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경우는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한다든지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거나 개별 학생이 자신의 분노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라고 결코 볼 수 없다. 오히려 학생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함께 침해당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학생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는 교사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주말 도심에서 열린 학생 집회에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을 동원하여 ‘안전지도’라는 명목으로 휴일노동을 강제한다면, 이는 교사의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침해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가 교실 밖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권리가 존재한다. 이는 국가와 학교 관리자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할 권리’이다. 만약 교사가 수업중에 자신의 신념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교육할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것이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때려서라도 학생들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다면, 이 때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교사의 수업내용이나 지도방식에 대한 학생 혹은 학부모의 문제제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교육할 권리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경찰이 고문을 수사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타인의 신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결국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교사의 인권 침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사들이 갖기를 원하는 권위 혹은 권력로서의 교권이 존재한다. ‘추락하는 교권’이라고 할 때는 주로 교사의 권위 실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많

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위와 폭력적으로 유지, 관철되는 권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해진 방식으로 권력에 대한 추앙과 순종'을 요구할 때, 이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으로서의 권위주의가 된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마땅히 혁파되어야 할 권력이다.

4.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전사회적 인권의식의 성장과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약으로 인해 '학생은 미성년자인 만큼 권리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거나 '인권보다 교육이 우선이다'는 주장이 점차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디딤돌 위에 교육을 새롭게 건설해야 할 과제를 회피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위로부터의 통제, 학교 구성원들이 공히 공유하고 있는 침묵과 체념의 문화는 학생인권 침해의 메커니즘을 재생산할 뿐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학생인권법안 통과

학생인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교육당국과 학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대폭 손질하여야 한다. 올 3월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두발규제 금지, 체벌 금지, 0교시와 강제 보충·야자 금지, 차별 금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인권교육 실시 등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대폭 담겨있다. 하지만 국회는 반년이 넘도록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의 법적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해야 한다.

2)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한, 끊임없는 논란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고 실효성있는 보장도 제공하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의견 표명¹⁰⁾, 두발·학생징계 등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등을 발표하는 데 그쳤을 뿐, 지금까지 학생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학교교육팀은 학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환경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발표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은 교육부 예시안을 기본으로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10)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2.9.9

미흡하고, 누락된 인권침해 사안도 많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학교생활규정을 비롯한 학교구조와 문화의 전면적 손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¹¹⁾ 나아가 교육부가 준비중인 학생인권종합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학생인권정책 과제 마련을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3) 실효성있는 학생인권종합대책 마련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생인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지엽적인 대책 추진 방침을 언론에 흘리고,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은근슬쩍 추진 방침을 폐기해버리는 태도를 주로 취해왔다. 대책을 내놓은 경우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 하나 내려보내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었고, 그 대책마저도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실효성 없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강제이발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현장에서 강제이발과 폭력을 동반한 두발규제가 사라지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부가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학생인권종합대책이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앞서 짚어본 쟁점에 대한 교육당국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관리·감독의 강화 방안, 학생인권 민원 처리 지침, 인권침해 예방책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학내 시위에 대한 원천 봉쇄는 금지된다’와 같은 뚜렷한 방침을 확립,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워크숍, 토론회의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4)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대구에서 발생한 ‘200대 체벌’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반면 언론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사건 해결을 미루거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학생들의 저항이 일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만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힘에 부치며,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험은 학생들을 좌절과 체념으로 내몬다.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인권침해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11)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출마자격 제한 대폭 삭제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학생회 권한 강화 △용의복장규정상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의 삭제 △징계절차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변론권과 재심요구권 보장 △체벌 금지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 전면 삭제 등을 개정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 참조.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발동권을 활용하여 학생인권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진정이 없더라도 즉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학교 현실에서 징계 위협에 놓인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인권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는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5) 인권교육 활성화

교사 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학교 관리자들과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도 시급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



청소년단체

“학생인권, 학교 현장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켜라”

유 윤 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벌 강제보충은 이제 그만, 학생에게 참여와 자치를”

김 진 숙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인권, 학교 현장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켜라

유윤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한 학생인권 현실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인권실태에 처해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나로와 아수나로가 속해 있는 연대체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인터넷을 통해 두발규제나 체벌, 강제야자 사례 등을 신고 받았습니다. 딱히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 있는 회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지만 띄워놓고 오는 것만 받았음에도, 그동안 두발규제나 체벌, 강제야자 등으로 수집된 학교 수가 9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강제이발이나 학생 뺨을 때리는 체벌, 학생회장이 두발규제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때리고 욕설을 한 것에서부터, 비교적 경미한, 옆드리게 하고 하는 체벌이나 머리를 뽑는 것, 두발규정 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의견 묵살 등까지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준 것만 해도 사정이 이렇습니다. 만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들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밖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학교의 뚜껑을 열어보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예컨대 지방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10대, 50대 맞는 거는 일상인데 뭘 굳이 신고하냐.”라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학생인권침해가 너무나 일상적이기에, 그리고 그 일상적인 것을 고발할 통로도 없고 그런 고발에 익숙하지도 않기에, 학생인권 현실은 아직도 온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인권 실태 조사가 단순한 표본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

이렇게 학생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면서 유지되는 교육현실의 원인은, 근원을 따진다면 경쟁 위주의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교육 때문이기도 하며, 또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교사·학부모와 학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체벌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제가 학생인권 관련 강연을 하다가 만난 교사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때리려고 해도 순간 화가 나면 손이 나갈 때가 있어서 고

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을 대할 때도 순간 화가 나면 손이 나갈까요? 혹은 동료 교사에게는? 결국 애초에 교사들의 내면에 학생들을 자신이 폭력으로 다스려도 되는 존재라는 의식이 있고 그에 따라 폭력을 억제하는 기제가 없거나 적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들이 학내시위를 하려고 “우”하고 운동장으로 나가도, 교사 하나나 둘이 뛰어 나오면 50명 100명씩 모여 있던 학생들이 모두 겁먹고 도망잡니다. 아니 100:1, 100:2인데 대체 왜 도망가는 건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매를 휘둘러도, 거기 10명, 20명만 달라붙으면 매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놀릴 텐데 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사들과 술하게 싸워왔기에 알지만, 특별히 친한 교사가 아닌 한 학생은 교사 앞에 서면 어쩐지 기가 죽는 것을 느낍니다. 이걸 학부모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미 내면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와 학부모가 쥐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은 정당한 교사·부모로서의 권리를 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는 때로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침해를 종용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인권침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학생은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섭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있기에 학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담당 교사 한 명이 묵살할 수도 있고, 두발규정에 관한 토론회를 할 때도 학생들이 교사와 학부모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무리 법으로 강제야간학습을 금지해도 강제 야간학습과 강제 보충수업이 횡행하는 ‘현장에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력 관계의 논리를 통해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 또한 해석할 수 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것이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학생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당장 현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거시적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법제화는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과거 1980년대 후반에는 자주적 학생회 운동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회 권한의 확장을 불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고하게 법제화시키고 자리 잡게 하기 전에 탄압에 직면하여 직선제를 제외한 학생회 권한의 많은 부분(예산권 등)을 빼앗겼고 그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법제화를 통해 운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 교육 환경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제도의 큰 틀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만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급과 밀화나 교사의 업무 과다 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학생회 직선제를 포함한 학생회의 강화 또한 학생들의 제도 밖, 현장에서의 저항을 통해 쟁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의 권력 관계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제도적 변화가 얼마나 공허한지는 이미 앞서 언급한 강제야간학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간학습을 강요하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항하여 그것

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한 힘을 지니기 위해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대상으로 취급되어오던 것을 벗어나 사회적·정치적 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여 집단적인 저항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측과 교섭할 힘을 얻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은 거리집회 등 학교 밖에서의 주장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장에서의 저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용의복장검사나 체벌 등에 반발하여 종이비행기 시위, 운동장 시위가 일어난 게 아수나로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다섯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내 서명운동이나, 두발자유 배지 달기, 전단지 배포 등이 이루어진 곳도 많습니다. 계속되는 학생들의 '반항'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을 만만한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보지 않을 때 현장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적 발언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해낼 때, 큰 틀에서의 교육 개혁 또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은 학생들의 정당한 저항의 행동들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뭘 해주겠다, 라는 식이 아니라 주체적 행동들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첫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들의 학내시위와 같은 의견 표시를 원천금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아서 그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두발자유가 쓰인 버튼을 달고 다녔다고 해서 강력한 위협을 당한 사례도 있으며, 학내시위를 막겠다고 소지품 검사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내시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이 이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은 당연할 정도입니다. 학교 외에도 울산교육청은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학생의 신상을 알아내어 학교에 통보하며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현재 청명고등학교에 대한 진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학생인권 문제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부에 학교폭력 외에는 학생인권 문제를 따로 다루는 부서도 없다는 점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부가 지방분권 시대라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청은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는 다른 학교들이나, 교육청 지침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현재의 상황은 직무유기입니다. 학생인권 문제는 모든 단계에서 힘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한 단계(교육청이나 학교 등)로만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의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먼저 실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교육

부의 몇몇 공무원이 비교적 학생들의 저항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교육공무원들과 장학사들 다수의 의식은 여전히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저항과 현장에서의 권력 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과정 없이 다수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적 통제' 주장과 학생의 보편적 인권 주장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차원이 아니라 그 근간에 있는 가치관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단순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아니 적어도 아수나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저항하는 것에 함께하고 지원할 것이며, 또 저항하는 학생들 자체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 학교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상이 학생인권보장 실현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체벌 강제보충은 이제 그만, 학생에게 참여와 자치를

김진숙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1. 학교 ~ 인권 침해공화국

- 체벌 오히려 오기가 생긴다.
기분 나쁜 체벌들. 교사는 통제하려고 하지만 학생들은 통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CA가 월요일1교시? 동아리 활동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 무너진 학생자치
- 아직도 강제이발, 두발규제는 여전하다
- 빨간색 안경테, 눈썹다듬기도 단속 - 황당한 용의복장규정
- 학생도 할말은 하고싶다.

2. 학생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 두발자유화 운동
- 오병헌: 오병헌이 사회, 학교에 눈뜨게 된 계기, 그가 주장하는 것, 왜 한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1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가. 그의 투쟁과정

3. 대안은 무엇인가

- 법, 제도적 접근
- 청소년을 바라보는 전 사회적 의식변화



체벌 강제보충은 이제 그만, 학생에게 참여와 자치를 (김진숙)

학부모단체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학부모와 함께 풀어나가는 청소년인권이야기”

박홍나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양시 회장/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윤 지 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1. 학생인권의 규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한국도 1991년 12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학대나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권리(제12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15조)
- 아동은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받으며, 간섭이나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6조)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적합한 놀이와 오락을 하며, 문화예술 생활에 참여할 권리(제31조)
- 건강하게 태어나서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며 깨끗한 위생환경 속에서 가능한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누리고 살며, 질병치료와 회복에 최우선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제24조)
-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제28조)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천이 미약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5년에 한 번씩 협약가입국의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권고의견을 내고 있다.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의 내용중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 *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 *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 *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 *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

- *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 등이 있다.

2. 국내의 아동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 관련 법

교육관계법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교육별 기준 및 절차¹²⁾

①학생 교육별의 원칙

- 「3무 3유」 실천에 의해 원crl적으로 학생 체벌을 금지함.
- 작금 교원의 교육적 질책에 대하여 스승존경 풍토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별(교육적인 별)로 제한함.
- 학생 체벌에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이에 근거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 체벌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②학생 교육별 기준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제한한다.
- 학생 교육별은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소한 일로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가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유념한다.
- 학생 교육별은 ‘회초리를 통한 사랑의 때’이어야 하며 회초리의 크기 및 그 회수 등은

12) 김혜숙외(1999.1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사회통념상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

- 교원의 감정이 개입된 체벌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일체 금지한다.
- 사랑의 매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육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제한한다.
(예:손 또는 옷을 입은 채의 엉덩이 등)
- 학생 체벌의 원칙적 금지에 따라 교사가 학생 지도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벌이 아닌 교육벌을 행사할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교육적으로 행사한다.

③ 학생 교육벌 절차

- 학생 교육벌은 단위학교별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한다.(학교 규칙에 명시)
- 교육벌 관련 규정은 교원,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교육벌 규정은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지시켜 체벌과 관련한 갈등 등을 최소화한다.
- 교육상 부득이하여 교육벌을 가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설득→이해→교육벌), 당해 학생에게 교육벌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학생 교육벌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벌 이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단, 매 사안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생 교육벌 관련 규정(각급 학교)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각급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원칙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교육벌 관련 규정을 정한다.
- 학생 교육벌 관련 규정은 교육벌 기준, 교육벌 절차, 교육벌 도구, 교육벌 회수, 교육벌 부위, 결과처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학교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 교육벌 관련 규정은 학교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동창회 등)의 의견을 수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규정한다.

⑤ 행정사항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비교육적인 체벌과 구분하기 위하여 앞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회초리에 의한 사랑의 매'를 교육벌이라고 칭한다.
- 학생 체벌 관련 규칙을 반드시 정하고, 이를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체벌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것.
- 학교 규칙에 정한 내용 이외에 물의가 야기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연대책임을 물을 것임을 유념할 것.

교육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체벌을 금지한 학교는 30.9%, 벌을 세우는 등 '간접 체벌'만 허용한 학교는 26%로 전체의 56.9%가 매를 때리는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26.3%, 명확한 체벌방침이 없는 학교가 16.8%이다.

3. 학생인권의 현실

- 0교시, 강제 보충·자율학습-휴식권 침해

- 체벌, 언어폭력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해 권고문을 내면서 체벌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체벌금지'를 수용하기를 거부.

-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 표현의 자유 침해-전학 등 강요

- 학교장과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제약

- 두발, 복장 규제

- 성적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유형의 차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열악하고 질 낮은 급식, 위험한 학교시설물, 쾌적하지 않은 화장실 등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침해

-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보장 취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

4. 학생인권 침해 요소 개선

1) 법과 제도의 개선

○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체벌 금지 명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체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체벌을 최소화하는 방법-규정을 어기는 교사에게 징계를 한다. 둘째는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원칙적 금지를 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법 규정과 교육부·교육청 지침과 각급 학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상존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의 수직적·권위주의적 문화, 군사부일체 의식 속에 놓인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체벌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어 보인다.¹³⁾

13) 체벌금지의 원칙이 국제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유럽(영국제외)과 동유럽 국가에서는 학교체벌이 불법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폴란드에서는 1783년에, 프랑스는 1882년에, 네덜란드에서는 1958년, 스웨덴과 덴마크는 1968년, 1970년대에는 러시아와 독일에서 학교체벌이 사라졌다. 북미지역에

- 관계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을 법률로 금지(0교시. 강제보충·자율학습 등)
- 교칙,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인권 관점으로 개정
-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자치활동 보장¹⁴⁾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는 학생들의 보통, 민주,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교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학생회 이외에 학년별, 학급별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교단위의 학생회 활동, 학급단위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다음 각호의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 선출, 반장선출 등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없이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임원선출 등 조직구성에 있어서 학교의 장이나 교원, 또는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승인절차 등을 통해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장 등의 관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4.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학생회는 학칙제정, 학생복지,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되어야 한다.

⑤ 기타 학생회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학생회 이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서는 캐나다가 학교체벌 불법화를 달성했으며, 이스라엘, 일본도 불법화되어 있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처음으로 ‘부모의 자녀체벌’까지 불법화시켰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이 뒤따르고 있다. 영국도 1986년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켰다.

14) 하승수(2003.9).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및 **학생회장**, 당해 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2조 ④, ⑤를 신설하여,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며, 다만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학생 인권교육 실시 법령화

제18조의3(인권교육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제18조의2에 규정된 행위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권교육 실시

- 교직과정의 인권교육 ... 교대와 사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사연수과정에서 인권교육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3) 「학생인권선언」 제정 ... 1998년 10.25 「청소년헌장」 제정, 1998년 교육부가 제정하려 한 학생인권선언 추진

4) (가칭)학생인권보장법 제정 ... 아동권리협약에 비준 학생인권보장법 제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같은 맥락)

5) 교사, 학부모 의식 개혁

-학생 인권 존중은 교권을 위축시킨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설혹 대립된다 하더라도 교권이 학생 인권의 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

‘교육적 체벌’과 ‘폭력적 체벌’을 구별하는 것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타인을 때릴 권리는 미약한 체벌이든 강도 높은 폭력이든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자식을 때리면서 가르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

일부 소수의 과도한 체벌로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체벌은 맞은 당사자에

게뿐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교육적이다

6) 인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부당한 권리 침해시 이의제기 및 구제할 수 있는 단위가 부재.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방식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단위가 마련되어야 함.

학부모와 함께 풀어나가는 청소년인권이야기

박홍나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양시 회장)

1. 들어가는 말

작년 5월 14일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거리에 모여 처음으로 두발자유를 외쳤습니다. 이에 교사나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으로 이들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올해는 5월 14일을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로 정하고 '두발자유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시 한 번 모여 청소년의 외침을 들려줍니다.' '언제까지 억눌린 채 살텐가? 모이자! 모이면 바꿀 수 있다!'면서 청소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기제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일까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의 반인권적 사례가 표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체벌, 폭언, 두발규제, 그리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제식훈련 등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밝힌 한 학생의 1인 시위가 보도되었고 이 학생의 행동에 대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연대하여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전교생이 두발규제에 대해 반대시위를 했다는 소식은 해마다 벌어지는 낮익은 학교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교사의 지나친 학생체벌 보도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잖은 동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집단행동까지 행사하여 학교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면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길고도 힘겨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 낸 민주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의 일부인 청소년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학교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한 책임을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라 하는 학부모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학부모들은 학교활동을 공적인 역할을 맡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10년의 과정 속에서 학교급식, 교복 공동구매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생들의 참여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대학입학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도록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진정한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불확실한 내일의 삶을 위해

‘일상의 피곤함’을 감수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점점 가슴과 머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를 막아낼 수 없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로운 지식과 정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궁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청소년인권문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청소년활동가로서 이번 학생인권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학교현장에 자율적인 변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선 학교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자세로 임하였기에 그 안타깝고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과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절실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참여적 의사소통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학부모연대에서는 작년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 몸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교육활동의 내용을 찾고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고양시학부모연대 청소년교육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학부모가 우리의 교육문제를 풀 실마리를 청소년과 함께 한 청소년인권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2. 몸말

교육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기감을 토로하고 국민 모두가 교육정책에 비난을 쏟아 붙고 있지만 정작 교육주체인 청소년과 학부모가 원하는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양시 학부모연대에서는 2005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인권아, 놀자!”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8월에 진행한 청소년포래인권지도자 워크샵Ⅰ과 청소년인권캠프, 10월~11월에 네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청소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지도자 워크샵Ⅱ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인간교육의 내용을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7월 중 4회에 걸쳐 청소년인권워크샵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고자 하였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인지.....청소년인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는 어떤 모양인지.....청소년들은 다양한 청소년인권교육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장애물을 찾고 청소년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워크샵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비인권적 교육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였습

니다.

워크샵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또래인권지도자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청소년인권캠프를 계획하고 함께 구체적인 캠프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캠프참가자들을 모집하여 8월 2박3일을 지리산 실상사에서 ‘인권아, 놀자!’ 청소년인권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리산의 질푸른 여름의 정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열어 인권과 한바탕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청소년인권지도를 조목조목 그려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연극놀이로 풀어보았습니다. 2박 3일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크샵Ⅱ에 참가한 학부모들과 청소년활동가들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 인권을 이야기하고 청소년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청소년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였습니다.

또 평화로운 의사소통법을 익히면서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갈등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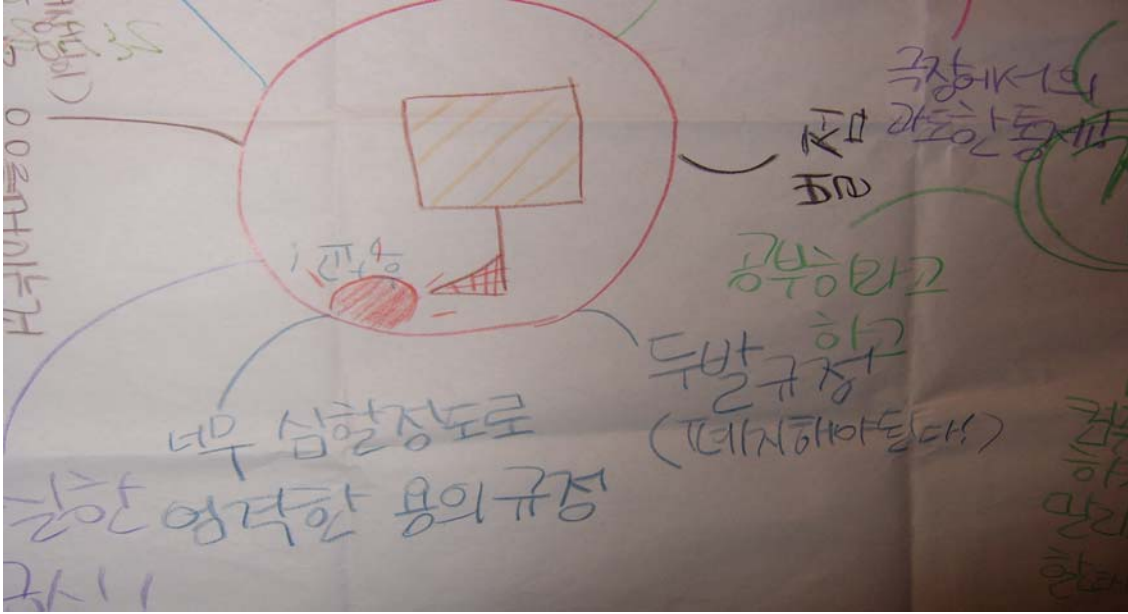
그리고 고양시학부모연대 청소년인권교육프로젝트 “인권아, 놀자!”의 성과와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인 청소년인권발표회가 12월에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교육워크샵과 청소년인권캠프 참가자와 청소년인권교육에 관심이 많은 고양시 시민(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사회활동가, 청소년교육 관련종사자 등)이 함께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인권아, 놀자!” 청소년인권교육워크샵 및 캠프 영상기록물을 보고 청소년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고양시 학부모연대의 작은 노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몸과 마음을 열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고 거짓없이 말하고 듣는 가운데 얻은 소중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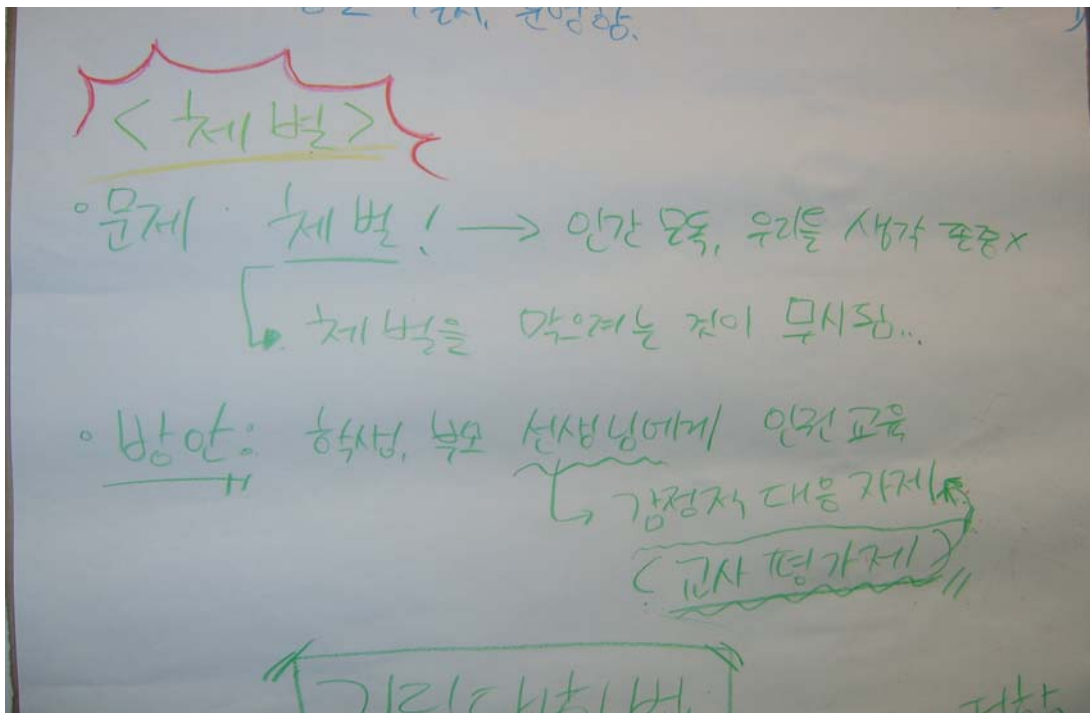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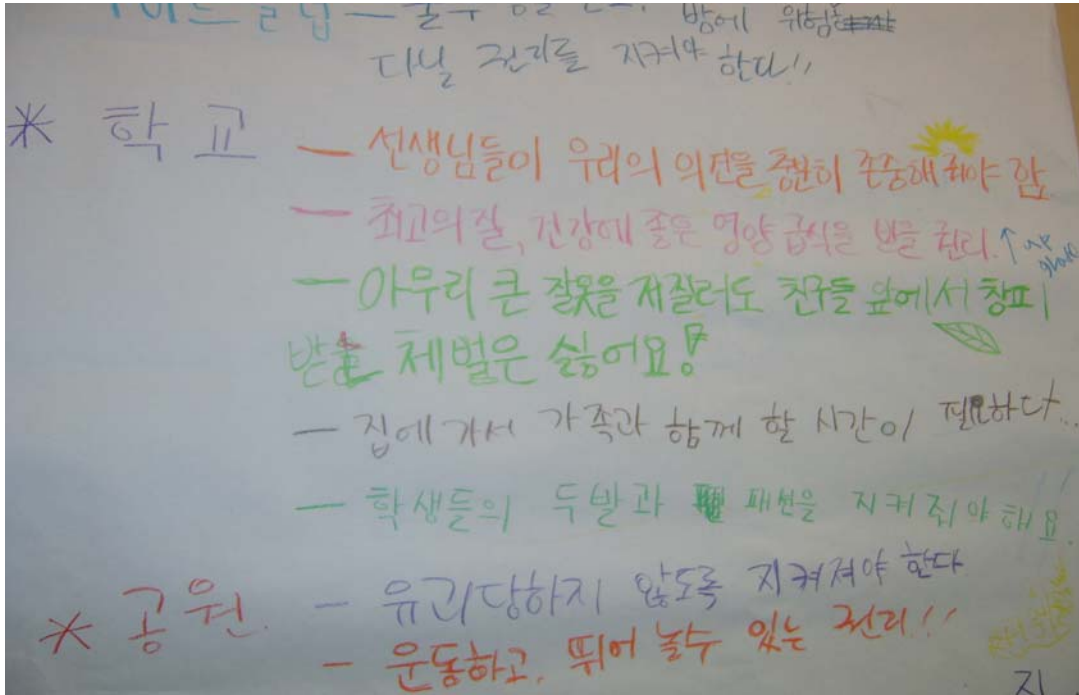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통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공간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지 토론한 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그림과 글로 표현했다.(청소년인권지도자교육 워크샵□□)



● 청소년들은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공간에서 인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으며 그 외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구속이 심하여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청소년인권캠프)

● 자신이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명확히 알고, 해당 침해된 권리를 다시 얻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후 청소년들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회의 자치권이 강화와 교사평가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기본적인

의견존중과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건강과 복지 등 아동협약에서 일반원칙으로 하는 가치가 학교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강제자율학습 등으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체적 자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대우나 처벌을 받을 때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청소년인권지도자워크샵□□)



● 청소년인권지도자교육 워크샵□□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처한 비인권적인 교육환경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를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연습을 했다. 폭력적인 ‘자칼의 언어’를 평화로운 ‘기린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했다.

●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말하는 청소년인권침해와 비인권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딱히 없다고 하소연한다.

3. 맺는 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자식이 손해보고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은 곧 ‘누리고’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귀착되어 제 자식이 그 대열에 끼지 못할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피곤에 절어 벌써 그 파릇파릇한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들도 피곤해 보입니다. ‘편안한’ 삶, ‘누리고’ 사는 삶을 향한 집착에 진작 현실의 삶을 편안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V광고에서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옷.....을 갖추라고 반복해서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편안한 일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정상에 올랐을 때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등학교 0교시 폐지’를 놓고 논의하면서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감은 머리카락에 물을 푹푹 떨어뜨리며 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해.....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듯 하더니 다시 정색을 하며 “그래도 해야지요!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야 공부를 하지...집에 있으면 잠이나 자고.....힘들어도 몇 년 참으면 좋은 대학 가서 실컷 자고 놀 테니....” 결국 ‘실컷 자고 실컷 놀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 TV광고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편안한 삶을 누리고 산다?.....왜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편안한 일상’을 꿈꾸며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림은 떠올리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그렇게도 아등바등하며 “잘 살아 보세”를 외치던 앞 세대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빼닮았습니까? 우리들은 세월은 가도 변하지도 않고 내일을 위해 현재를 죽이라고만 합니까?.....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우리 어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바로 이 현재,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삶을 애정을 갖고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너무 소박하다고 느낄 지라도, 우리 삶에 실재하는 행복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학벌’과 ‘물질적 풍요’에 다가갈 길은 자꾸자꾸 더 어렵게만 만들어 가면서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끊임없이 조종합니다. 언제까지 내일의 ‘편안한 일상’을 꿈꾸며 오늘의 ‘피곤한 일상’을 강요하는 ‘유물론적 역사관’의 반복된 놀이판에서 꼭두각시 춤을 추고만 있을 것입니까. 귀한 자신의 소중한 소명을 찾기도 전에

스스로 삶이 힘들다하여 쉽게 삶을 포기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이 충격적인 일을 일상으로 편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찾아주려면 우리 어른들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풀어나가는 청소년인권이야기 (박홍나미)



교원단체

“학생인권과 학교”

현 원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장/

“학생인권, 교권과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하여”

백 복 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학생인권과 학교

현원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장)

학생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가 되려면?

학교의 구조적 현실

1. 학교의 현상

- ▷ 입시체제
- ▷ 거대학교 · 과밀학급
- ▷ 복지와 자치 부재

2. 학교의 기능

- ▷ 사회적 재생산 기능
- ▷ 아동 보육과 청소년 통제의 사회적 기능

3. 학교의 구조

- ▷ 기구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교감
 -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 그 외 각종 위원회
 - 학교 행정 부서

- ▷ 학교의 구성원
 - 학생
 - 교사
 - 행정직원
 - 교장/교감
 - 교사
 - 학부모/지역인사

4. 학교와 사회

- ▷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
- ▷ 학교와 사회의 역할과 지원 체계

대안의 모색

1. 제도적 대안

- ▷ 학교 현상의 극복 방향
 - 입시체제 완화
 - 거대학교·과밀학급 해소
 - 학교복지와 자치 기능 활성화
- ▷ 학교 기능에 대한 담론 지형의 변화
 - 어떤 지식과 문화를 어떻게? - 교육과정(평가)
 - 보육과 통제의 분담(가정과 사회, 국가) - 교육재정과 복지
- ▷ 학교구조의 변화
 - 기구의 민주화 : 학교 권력의 횡적 분산과 종적 민주성 강화
 - 학교 구성원간의 균형 있는 권력 분점과 민주적 의사소통 강화

2. 실천적 대안

- ▷ 실질적 인권교육의 구조화
 - 통합적 인권 교육 실시(*교과/생활교육)
 - 교사 교육 연수 의무화(교육시수 적정화)
 - 교장과 교감,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에 대한 교육(교육 시수 적정화)
 - 교육 주체, 학교 구성원간의 상시적 토론과 의사소통 프로그램 상설화
- ▷ 학교교육 문화운동의 추진과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체벌 안하기, 비폭력 문화 운동 등 학생-교사 관계 변화와 학교문화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천 운동 전개
 -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지원 체계 마련(*학교폭력대책/교육복지/상담/인권 부서의 통합과 현장 참여 구조 확대, 재정 확보)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학교와의 연계 체계 구조화
 - 관련 정부 기구간 소통과 협조 체계 강화

3. 학생인권 법제화 운동의 방향

- ▷ 종합법안화(입시체제완화/학교복지확대/학교폭력문제 해결/교육과정의 민주화/학교의 민주적 운영구조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등)
- ▷ 시급한 해결과제 중심의 법제화와 동시에 다각도의 보완책 마련
- ▷ 체벌 등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대(*사회폭력과 복지/인권 정책 대안 마련)
- ▷ 근본적인 공교육의 문제 해결책 마련, 우리 사회의 민주성(근대성) 성찰 계기로

학생인권, 교권과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하여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1. 부딪히는 학교문제

최근 군산의 모 초등학교 체벌 동영상건과 대구의 지각생 과잉체벌건 등으로 학생체벌이 교육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선 작년 5월에는 성남의 모 고등학생 800여명이 한꺼번에 운동장으로 몰려 나와 '두발규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기습시위를 벌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었다.

두발 규제를 비롯한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시각에는 다소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발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보다 외모에 더 신경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혹시라도 탈선의 길로 걸어갈까 걱정 어린 시선으로 통제하려 한다. 반면 학생들은 표현이 자유로운 시대에 자신만의 개성을 한껏 누리고 싶은 욕구에 획일적인 규제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열풍은 일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소수집단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한층 만들어 주었다. 최근 '인권'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심이 증폭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신장의 목소리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들이 거리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은 보호받아야 하는 피동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교직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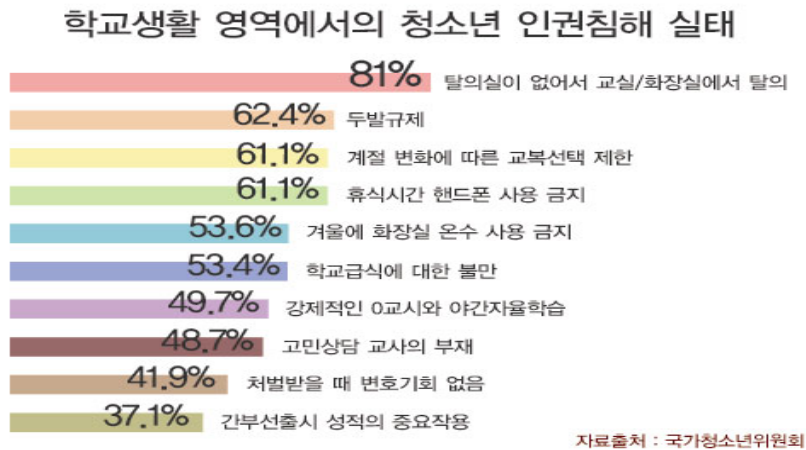
2. 인권의 주체로서의 학생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학생을 피교육자로서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관계법, 국제조약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학생의 인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학생의 의무 규정도 추가하여 교원의 교권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오늘의 학교현장은 - 최근의 주요쟁점에 대한 생각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은 '탈의실 부재'를 불편함 1위로, '두발규제'를 인권침해 1위로 본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체벌과 두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이외에도 졸업앨범 뒤의 학생신상정보의 공개, 성적표를 교실에 붙이는 행위, 몇 점 이하의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혼내는 행위, 학생의 개인 신상이 적혀있는 교무수첩 등을 교실에 방치하는 행위, 교문지도를 하면서 학생의 가방과 옷을 검사하는 행위, 학생 징계 시 학생 성명과 징계 사유·징계 종류를 함께 명시하여 공고하는 것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학생인권 침해요소들이다.

체벌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체벌이라는 지도방식은 가능한 지양되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체벌금지의 당위성만 강조되어서도 안 된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

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문제와 함께 교육의 효율성, 교권의 문제와 어우러져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거나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사의 수업할 권리이자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사가 이런 학생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고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본다. 다만, 침해되는 권리에 비해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게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 보다 질 높은 교육이 행해져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두발과 관련하여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원의 지도라 할지라도 강제적이거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반대한다. 학생두발의 제한 및 규제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학생두발 제한 및 규제는 단위 학교의 자율에 맡기되, 강제적인 머리 깎기 등 과도한 방법으로 논란이 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 감독청의 적극적인 지도가 요청된다. 또한 단위 학교는 두발 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반드시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로 현재의 체벌, 두발 논란이 마치 교사의 교권에 대한 도전 내지는 충돌의 양상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거리에서 집단적인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4. 교권의 관점에서 본 학생인권

한국교총은 작년 5월에 교직윤리확립 및 교육계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40만 교원에게 교직수행의 윤리적 지침이 될 수 있는 「교직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한 바 있었다. 교직윤리헌장의 실천다짐 첫머리에 “나(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교사)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교사)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교사)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배우는 지위에 있으며, 학생들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명심해야 한다. 학교의 기본 질서유지, 학칙의 준수 등 학생의 의무도 권리와 함께 교육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고민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는 책임지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에 빠진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볼 수 없을 까?’, ‘이렇게 고민하는 나를 학생들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인가?’ 학생 인권 이야기가 사회 이슈화 될 때마다 교사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하다.

교사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일부 이해될 수 없는 과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식은 분명히 사라져야 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는 지식과 기술만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다. 인성과 품성을 가르쳐야 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하는 장소이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품성까지 지도하겠다는 열의와 자긍심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버릇없는 행동이나 나태한 생활태도에 대해 그냥 넘기지 않고 혼을 내서라도 고치려고 하듯이 교사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회초리를 들어서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부에 집중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두발이나 복장 등으로 마음이 헤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지도하는 것이다.

요즘 언론 등을 통해 학생 인권 침해라고 지적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지나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교과 및 생활지도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 땅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행위가 학생인권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어서는 안 된다.

5.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당위성과 현실성간의 괴리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교원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생인권 증진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이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자식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학생인권 증진도 올바른 교육도 성립될 수 없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학생에 대한 이해이다.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돌이켜 볼 때, 교사가 아무리 서운한 말로 꾸중하고 심지어 종아리를 때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느껴질 때 서운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 남았던 것을 기억

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두발규제의 근거에 대해서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준수해야 할 학생들은 그러한 교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학교와 교사의 논리는 공색할 수밖에 없다. “만들어졌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따라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칙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체벌, 두발, 복장 등)에 대해 학생을 반드시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정해진 기준을 스스로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불편해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교육환경에 관한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탈의실은 반드시 필요하며, 겨울철 화장실 온수 사용, 학교급식 개선, 상담교사 부재 등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 문제들이 거론될 때마다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체적, 인격적 발달 정도가 다르고, 남학생과 여학생, 실업고와 인문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사정이 다르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전국의 1만천여개 학교의 24만개 학급에서 42만 명의 교원과 1,200만 명의 학생이 만나는 장(場)이다. 수업시간과 생활지도의 현장은 항상 가변적이다. 결코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한반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집중시켜 가며 입시준비와 성적 향상이라는 지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교사들 운명이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다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반복되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고려않고, 교사들의 전문영역인 학생지도 방법까지 법으로 통제한다면 열정을 가진 교원들은 의욕이 꺾여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금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두발규제 등 학교교육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었다.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은 존중하나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권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이 인권적 시각과 잣대로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이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권리주장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불만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명예나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방침이나 학칙에 대한 불만으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실명이 거론되는 비난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주장은 타인의 명예 및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돌아보아야 한다.

6. 학생인권, 교권과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하여

최근 들어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등 교육적 행위들의 일상적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인권단체 등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불만과 위기감은 늘어나고 있다. 학교의 복잡한 교육적 맥락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만을 절대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권 침해를 넘어서 교사의 인권까지 침해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합계 출산율 1.08명,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난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요즈음 경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인권’ 개념의 급격한 확장은 교사들에게는 학교가 무너지지는 않을 까하는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하게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 한두 번 받고 나면 “열정적으로 가르치다가 문제가 생기느니 대충 가르치자, 그래봐야 누가 손해냐 !”는 교사들의 탄식과 오기를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장시키면서 교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학생인권의 중요성 못지 않게 교사들의 교권도 중요하다. 이것은 교사들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오늘의 논의가 학생들의 인생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교사들의 선한 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학생인권, 교권과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하여 (백복순)



교육단체

“학생 청소년 인권 침해와 대응방안”

권혜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학생 청소년 인권 침해와 대응방안

권혜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1. 청소년 인권의 내용

- 한국사회 청소년의 일반적인 삶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의 인권은 크게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인권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인권, 그리고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1. 청소년인권프로그램집 수록)

생활영역	권 리 의 내 용
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표현할 자유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알 권리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고문과 사형, 기타 비인간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 - 형사절차에 놓인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사회복지 지원받을 권리

2.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내용과 인권침해

(1) 학교 속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

① 사생활의 침해

- 청소년은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에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거나 혹은 학원에 과외 수업까지 받는다. 결국 이 시대의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 활동과 인간관계 형성 등 사생활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소지품 검사는 말없이 당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사생활 침해다.

②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 청소년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는 두발과 복장의 문제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남자에게 스포츠형 머리를, 여자에게 단발형 머리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장식 교복과 운동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두발규제는 신체의 자유, 즉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③ 비인격적 체벌의 문제

-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의한 체벌이 현실적으로 통제의 유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상식의 선을 벗어난 폭력적 형태의 무차별적인 체벌은 학생에게 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④ 교사의 편견

- 문제아들에 대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성적중심의 학생평가와 촌지문화는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는 단순히 성적 비교에서 나아가 인격에 대한 비교로 발전되기 쉽고 여기서 피해를 받는 청소년은 교사의 편견을 받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위의 차별을 받는 학생이 반대의 차별을 받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따돌림을 받는 '왕따'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있어 공정한 학생관리와 배려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초가 된다.

(2)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 침해

① 과보호로 인한 침해

- 부모세대의 저학력과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자녀수의 감소 등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대리 만족으로의 욕구 충족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청소년기는 미성년으로서 가정의 보호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과도한 보호는 청소년의 꿈과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가정 폭력의 문제

- “내 자식 때리는 건 내 맘이지 무슨 상관이나”라든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해나 자살은 지식에 대한 무분별한 소유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보통은 이러한 학대의 내용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 제도적으로 가정내의 폭력도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싸움을 포함한 이러한 자녀 학대를 가정문제로 치부해 버려 사법 당국이 관여를 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③ 성적 학대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행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내담자는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다. 그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한 16명의 피해자 중 14명이 근친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대부분 어머니가 가출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딸을 보호하지 못하고 남편의 성적 대상이 되도록 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아버지가 보호자이며 친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가해자인 아버지가 친권 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적 보호조치가 없었다.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친권의 오용 또는 남용의 문제로 인해 해결책이 없는 청소년이 가출을 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시설을 이용하려는 아이들조차 부모의 인계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구조로 운영되었다.

(3) 가출 청소년의 문제

-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 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까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주된 복지사업은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 배회하다 경찰에 단속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요즘 청소년 쉼터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가정으로의 복귀를 꺼리는 학생 청소년은 이마저도 보호받을 수 없다.

(4) 근로청소년의 인권침해

- ‘미성년자 고용법’에 의해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고용이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은 주로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허가 사어장이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의 경우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공공연하게 유흥업소에 고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강도높은 노동과 저임금 등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청소년의 관심영역별 인권내용과 침해

(1)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건강권

- 상당수 중·고등학생은 책걸상 높이가 맞지 않아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공업규격용 고교생 책상의 평균높이는 72.5cm, 의자는 43.2cm 정도인데, 일선고교에서 사용중인 책상은 65-69cm, 의자는 44-46cm로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걸상의 높이 균형도 무시되고 있다.

(2)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

① 체벌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만남,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의 체벌은 효과적일 수 없고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② 학습권

- 사회 각 분야에서 최첨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딱딱하기 그지없는 나무 책상에 나무의자, 거의 개방되지 않는 특별 활동실, 먼지투성이의 교실, 지저분한 화장실, 책 창고에 불과한 도서관 등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의 선택권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C·A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화, 교과목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교사에게는 교권이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존재해야 한다.

③ 여가활동

- 정규수업 이외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면서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제약받고, 여가활동을 하려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① 표현의 자유

-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옷차림을 등교길 교문에서 검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손발톱까지 검사한다.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는 학교나 학년에서는 더욱 심하다.

② 종교의 자유

-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는 교육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크게 제약되고 있다. 사립학교 중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많은 경우 초·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고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서 특정한 학교에 학생들이 배치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되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중

교교육을 받을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③ 결사의 자유

- 교육법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불법시하고 대부분의 학교당국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최소한만 허용한다. 심지어 학생회의 대표를 뽑는데 피선거권의 자격으로 우수한 성적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학생회의 간부는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학생들이 차지하고 이들은 대부분 집안 환경도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경우가 많아 학생회는 이런 상위층 자녀들의 친목 단체처럼 전락되었다.

학생회활동을 규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동아리활동도 규제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을 배정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의 이름으로 교과공부만을 강요함으로써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하는 집단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혹은 학교 간의 자치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는다.

④ 사생활권

- 청소년들의 사생활은 학교와 사회에서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교실에서 소지품 검사는 관행화되어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인 학생의 신분으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검사하기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영장없이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사생활과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단지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학생의 신상정보가 교직원에게 의해서 유출됨으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청소년의 사생활권을 설명할 수는 없다.

(4)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① 부모의 신체적 학대

-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는 가정폭력의 일종이지만,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간주되고 별다른 대책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향이 있다.

② 성적학대

- 친인척에 의한 성적 학대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는 주로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크고, 보호하거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

- 교직원에게 의한 학생의 성적 학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의한 학생의 성적 학대는 주로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남용하여 방과후에 남게 하거나, 과학실·음악실·체육실·숙직실 등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을 유인해서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은 교사라는 지위의 특성상 이를 알릴 수 없으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

4.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원인

(1) 입시문화의 지배

입시문화가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전체 학교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열한 입시경쟁의 현실 속에서 성적은 단순히 학생들이 교사가 전수해 주는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성적'은 곧 능력을 의미한다는 잣대로 학생들을 차별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차별화된 위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성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능력과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서 인정받고, 대입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

입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학교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나 친구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하기가 힘들고, 경쟁적인 동료관계를 강요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불안과 불신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문화의 지배에 숨막혀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교육내용의 사용가치보다는 졸업장이라는 교환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학력사회라는 점, 교육적 논리와 철학보다는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논리에 학교 또한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낙오자라는 낙인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입시문화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만을 강요하는 주입식교육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효율적으로 관리된 온순한 국민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 순종적인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의도, 가족단위의 입시출세주의가 보편화된 가운데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생성, 유지되어 왔다.

(2) 통제위주 권위주의 문화의 지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행동성향도 주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입시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교사에 의해 점수화되고 있으며, 입시문화의 지배하에서는 교사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은 학교의 규율과 위계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질서에 순종할 것을 강요받는다.

학교공간은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교단은 학생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지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층마다 학년별 교무실을 따로 설치하여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도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내 구성원들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양산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장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위계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경직되고 비합리적인 학교규율에 대한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길들여지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공동 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규율을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구축해 나가기보다는 강요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기가 쉽다. 학교가 요구하는 규범을 획일적으로 내면화한 획일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며, 통제받는 것에 익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5. 학생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대응 방안(학생인권법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이란 화두가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각종 정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소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관련 이벤트는 그러나 이벤트로 머물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의 변화가 아닌 성과 중심의 사업 영역이 하루속히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소위 ‘학생인권법’이라 하여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회 법제화, 0교시 폐지, 강제적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등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법의 개정을 두고 여러 단체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의 신장 방안을 대신하겠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홍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교과모임, 유니세프, 민주화기념사업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지난 8월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고 향후 국회통과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이수나로, 민노당청소년위원회, 문화연대 등)

지난 5.14 인권행동의 날을 통해 두발자유 거리집회를 계기로 지난 8월 전국 순회 거리캠페인을 통해 학생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에 1,6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인권법 재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서울교육혁신연대/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장애인교육권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홍사단교육운동본부/인터넷뉴스바이러스)

지난 7월 발족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00만인 서명운동** - 상징적의미의 100만인이 아닌 실질적인 압력수단으로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거리 서명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인권포럼(전국투어)** - 8월 8일 서울에서 1차 청소년인권포럼을 시작으로 9월 23일 전주 이후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다시 서울 등을 순회하며 학생인권법 홍보와 공동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포럼을 통해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앞 1인시위** -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앞에서 유명인사와 참여단체 대표들이 1인 시위를 통해 정기국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거리촛불 행사** - 1인 시위를 마치는 다음날 16일 광화문 앞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촛불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의 날 행사** - 11월 학생의 날 행사의 주간 선포를 통해 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를 각인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간선포식, 청소년인권포럼, 학생인권선언문 발표, 문화행사, 기념행사, 청소년주장발표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본 행사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의 참여도 함께 이끌어 낼 예정이다.

마무리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기는 것과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바로 청소년 단체와 교육시민단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89년 전교조가 국민들의 지지속에 탄생하고 수 많은 노조와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과거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사회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할 때 그 지지가 실망으로 더 나아가 무관심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 속에서 알고 있다. 결국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의 근본적인 역할은 학생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목적을 수행할 때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인되고 그 속에서 교육시민단체의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 스스로의 주체적인 참여는 더 없이 중요하겠지만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는 교사들의 결단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은 유행이 아닌 참여의 과정이란 생각이 더욱더 깊어진다.

학생 청소년 인권 침해와 대응방안 (권혜진)



전문가

“인권친화적 ‘학교표준’ 설정의 상상력”

이 수 광
/이우학교 교감/

“중등학생 인권 실태와 인권지킴 방안”

유 성 상
/한국교육개발원/

인권친화적 '학교표준' 설정의 상상력

이수광 (이우학교 교감)

1. 공포와 협박의 '학교표준'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대개의 학교 운영 형식은 닮은꼴이다. 학교급별 혹은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근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개의 학교들은 '일관성 다쌍생아'처럼 복제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 혹은 '학교'에 대한 사회일반의 사유가 경박하고 상상력이 빈곤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표준'¹⁵⁾ 그 자체가, 지나치게 자폐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인식을 결여한 탓이다.

당대인의 삶을 구속하는 시대규범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성공'이고 나머지 하나는 '입시에서의 성공'이다. 전자가 최종적인 목표라면 후자는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시대규범은 학교표준의 배경 맥락이 되거나와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권력자(학교당국이나 교사)들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수능 D-100일

고교 3년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 문구는,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서의 학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포의 수사학'이다(이 문구는 특정 학교급에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교육활동의 실제적인 준거가 아닐까 싶다). 이 수사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성립이 불가능하다. 삶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전개되겠는가?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그런 단선적 삶이 얼마나 허용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특히 이 명제는 대다수 학생의 입시실패(명문대학 진학의 불가능)를 전제로 고안된 협박의 수사라는 점에서, 현실의 '학교표준'이 얼마나 문제적인가를 보여준다.¹⁶⁾

실제로 학교 교육활동에서 가장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가치는 '성적'(점수, 정확히는 등수)이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조직 운영)이나 교수·학습 형식도 입시결과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학교의 조직관성(organization inertiar)도 '시험' 혹은 '입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작동한다. 이런 탓에 '입시'이상으로 중요성을 갖는 공적 가치들을 부차적으로 만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공포와 협박의 학교표준이 소통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순종강화체제'와 이를 지지하는

15) 학교표준(學校標準)이란 학교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장치, 규정, 그리고 학교의 현실태를 지지하는 학교관련자의 신념체계 및 집단적 기억 등을 통칭하는 내 나름의 조어(造語)다.

16) 협박의 수사학은 일상적이다. 각 학교 정문에 걸리는 입시결과를 자랑하는 연수막이나 '훌륭한(?) 선배의 출세를 자랑하는 선전문구가 그렇다. 또 어떤 학교처럼 특정 시기의 성공적인 입시 성적을 학교동판에 새겨 넣어 영구 보전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공통적으로 동질의 욕망을 갖도록 선전하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신화적 교육인식’이다. 즉 학교는 ‘공부’이외의 관심(실존적 고민이나 질문 등)에 대해서는 ‘유예’ 혹은 ‘분산’시키고, 학교질서에 순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억압’, ‘배제’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들도 정교하게 시스템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근거도 빈약하고 시효도 이미 상실한 ‘교육신화’를 지속적으로 유포시킨다. 온갖 종류의 언설을 동원하여 ‘꿈을 대신 꿰주고’, ‘삶의 형식도 결정해’ 준다.

주목할 대목은, 이러한 공포와 협박의 학교표준은 날로 ‘자기증식’을 강화한다는 점이고 그 정도 이상으로 ‘구조적 폭력’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양산되는 ‘구조적 폭력’ 또한 학교표준의 힘에 의해 은폐되거나 날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을 지탱할 만큼 학교표준은 강고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교육희망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

2. 학교의 암묵지(暗黙知)와 학생인권 현실

공포와 협박의 학교표준은 과도한 교육주의(educationalism)를 강화한다. ‘학교공부를 잘하면(입시성공)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대개의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통한 존재증명’에 진력하길 요구한다(이러한 요구는, 학교가 강조하는 폭력적인 행동원리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자 ‘자기기준’으로 동일시할 만큼 위력을 갖는다). 그리고 학교당국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동기 자체를 단순화시킨다. 즉,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기획하기 보다는 ‘주어진 텍스트를 잘 가르치는 일’이나 ‘시험 적응력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학교분위기는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는 반인권적 삶이 조건이 된다.

성마르고 까칠한 학교 이미지

본질적으로 학교는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실존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즉, 인간적 삶에 대한 질문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소통되고, 한편으로 ‘포용적’이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사유가 소통되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인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학교현실은 정반대다. 학교의 암묵지(학교풍토)는 빈약하고 후진적이다.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학습되는 가치(권위, 순종, 형식, 결과, 경쟁, 점수, 시험, 등수 등)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그것 간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 순간에도, 폭력적 체벌, 교사의 무례한 언행, 비상식적인 두발 규제와 이를 해결하는 고급의 기만술¹⁷⁾, 복장검사와 소지품 검사, 강제 야간자율학습, ‘표현의 자유’의 억압(인터넷 활동 제한조치 혹은 징계)에 대한 항변은 지속되고¹⁸⁾, 터무니없는 격문도 여전하다.¹⁹⁾ 이러한 학교풍토에서 ‘인간적 가치의 신장’, ‘공적가치의 민감성’, ‘개인별 창조

17) 고급의 기만은 대의명분과 집단책무를 강조해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동조를 형성시킨다. 일례로 ‘학교명예’를 들어, 두발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 <http://highschool.or.kr/>

성과 독특함의 존중', '감수성 신장', '지식보다는 사색과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활동' 등이 가능하겠는가? 설령 학교요구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들 제대로 읽힐지도 사실 의문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에게 대해 오래전부터 항변해왔다. 최우주의 학교제도 헌법소원 제기(1995), 이태우의 양심적 학교거부(2002), 강의석의 종교자유를 위한 단식투쟁(2004), 오병현의 1인 시위(2006), 그리고 다수의 저항 사례 등은 개인적·일회적 사례가 아니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는 학생들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권위에 의해 지배되고, 순종 강화 체제 속에서 '동의의 조작과 강제된 복종'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법리 논의를 생략하더라도, 인권침해 정도는 '감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제기하는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인간적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 예의가 느껴지는 학교분위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전제된 가치는, 설령 학교표준이 높은 수준의 교육적 정합성을 담보하는 경우라도 항상 우월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언제나 정당하다.

3. 인권친화적 '학교표준'의 상상력

1) 중심의 재설정 : 학생중심의 학교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다(教育主權在民). 이를 상세화하자면 교육주권재학생(教育主權在學生)이다. 헌법적으로도 학생의 교육권은 생래적기본권으로 여타의 교육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교육주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특히 권력관계로 볼 때에도, 학생들이 시민적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학생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학교가 교육주권재학생(教育主權在學生)을 수용한다면, '학생중심의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단위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이어야 하며, 운영의 측면에서는 학생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학생에 의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생을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학교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결과로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신들이 주인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학생의 학교'가 되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자극됨은 물론 '학습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도 여타 학교에 비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교사와 학부모는 밀도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중심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참여를 어떻게 시스템화 할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은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다).

19) 청소년 관련 사이트에서 조사한 급훈 실태를 보면, 그중 가장 많은 종류가 2호선(서울대입구역이 있는 지하철 노선)과 관련된 급훈이다. 그 예로 "2호선을 타자", "2호선 탈래? KTX 탈래?" 등이며 이외에도 "엄마가 보고 있다",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재수없다" 등의 내용도 있다. 2005년 현재 학교는 이런 급훈을 걸고 '교육'을 한다.

<p>학교운영과 관련한 학생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의 협의 결정 ·학칙개정 요구권 및 개정소위원회 참정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학생법정 개최권 및 학교정책 토론 제안권
<p>학습관련 학생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운영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사전 열람권 ·학생중심 교과 주간 운영 ·교과선택권(선택중심교육과정) ·학기 평가회 개최권 및 학교(교사)출석 요구권 ·교사의 수업 평가권
<p>학생자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결성 및 운영권 ·학생회 예산 편성권 및 결산권 ·학교행사 기획권 ·학급·학년 총회 소집 요구권 ·학교 홈페이지 운영 관련 참여권

2) 학생중심 학교의 전제조건

‘학생중심의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는 학교구성원 간에 학교 운영 원칙과 이의 배경이 되는 학교이념(혹은 학교경영방침)의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집단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도 학교이념에 대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례적인 내부 토론회, 학생활동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는 평가회 및 수업연구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연수의 경우에는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학교혁신의 고민을 제기해 주는 내용들로 구성하되, 평가회와 수업연구회에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단위학교가 ‘학생중심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도(readiness)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요구가 학교운영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이의 반영여부가 협의 및 공론화되고, 다시 그 결정내용이 학생들에게 환류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참여에 대한 ‘자기동기’를 강화하게 되고, 학교와의 신뢰관계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회의 제안에 대해 학교장이 답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학생대중의 요구를 학교경영 책임자가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인터넷 비공개 제안방 등)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참여와 자치활동을 촉진·격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언제나, 학교예산이 풍족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자치 활동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예산규모’의 문제라기 보단 ‘철학’의 문제에 가깝다. 여러 가지 학교사업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는 학교의 교육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도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차원에서는 학생의 참여와 자치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정보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활동으로 인해 학교가 발전한 모습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한편에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정,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 존재규정, 구성원으로서의 동류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심성이 학교 저변에 공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중심의 학교' 실험 사례를 단순히 '홍내내기'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 참여와 자치활동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 여긴다면, 이는 피로도만 더해 주는 한 낮 유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4.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견의 전략

학교표준의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청 차원의 정책과제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한 사고실험을 해보자.

발견 전략 1 : 교육 리더십의 층위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교육계 리더(교육관료 혹은 학교행정가)들의 인권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교감·교장 자격연수 내용에는 학생인권 과목이 필수화되어야 한다. 현행 연수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기존 학교운영 형식의 재생산에 가깝다. 이런 조건 속에서 학교표준 재설정의 상상력이 소통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적극적으로는, 교사양성 과정에서도 인권교육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될 필요하다.

발견 전략 2 : 학교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문화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개해야 할 학교정보 내용 중에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가 공적기관이며 교육활동 또한 공공성을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견 전략 3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학생인권법) 및 이에 근거한 세부 실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발견 전략 4 : 학생인권 침해 및 이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조직·운영은 분쟁 그 자체의 신속한 해결은 물론 학생인권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심화·확대하는 데도 긍정적일 것이다.

발견 전략 5 :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상보적인 관계다. 즉, 일방이 실패하면 나머지 한쪽도 실패하게 되는 관계다. 이런 점에서 양자의 인권감수성은 win-win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점이 설득될 필요가 있다.

발견 전략 6 : 인권친화적 학교표준은 학습효과에도 긍정적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의 존재언어’를 찾는 과정이자 자신과 여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질문 과정이다. 이러한 사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신장되는 만큼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억압적 통제를 통한 학습 환경 조성 전략은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동기를 찾고,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함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생각 덧대기

학생들의 인권 기준이 상승된 상황임에도, 학교현장에는 ‘문제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무감각’, ‘의식적으로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침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약해서 문제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실패의 공포’가 여전하다. 현실을 승인하는 ‘냉소’ 또한 만만치 않다. 숨방망이보다 못한 면봉수준의 형식적 도덕성도 여전하다. 이런 탓에 사회일반의 평균적 인권감수성이 학교사회로 이행하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학생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인권이 걸도는 일종의 ‘교육스캔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학생·교사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중등학생 인권 실태와 인권지킴 방안

유성상 (한국교육개발원)

1. 중등학생 인권실태 연구

(1) 중등학생 인권실태연구의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6년도 기본과제의 하나로 "중등학생 인권실태 분석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142개 학교 2학년 총 9,323명 (중학교 82개교 5,355명 / 일반계고교 47개교 3,153명 / 실업계고교 13개교 815명), 교사 1,420명, 학부모 1,42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중에 있음 (아직 기본적인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 중등학생 인권에 대한 개별 학교의 태도

-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학생인권의 이슈와 맞닥뜨리게 됨 (예를들어, 용의/복장규정 관련 갈등, 교칙개정관련 갈등, 학내 종교의 자유에 관한 입장 차이, 성차별/폭력, 학생의 정보 보호권의 범위에 관한 갈등, 학교폭력 및 독단적 학교운영에 따른 문제 등)
-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일방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을 무시하거나 감추려 하고 있음
-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면담 및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학교 선정시에 많은 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자료수집을 거부하였음

(3)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도전인가?

- 이들 학교가 견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학생인권논의가 학교/교사 입장에서 도전적인 주제이며,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는 부담 때문임
- 그러나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지킴의 방안을 내세우는 일련의 행위들이, 왜 교사들의 교육권에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4) 중등학생인권문제, 회피한다고 해결될 것인가?

- 중등학교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대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제한된 활동만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
- 그러나 입시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보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본다면, 현재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되거나 감추어지는 것이 아님

2. 중등학생, 그들의 인권

(1) 학생들에게 있어 인권의 의미

“인권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필요에 대해선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함을 뜻한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인권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터전이자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 (1948) / 아동인권협약 / 청소년헌장 및 청소년인권선언 (1998) 등)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은, 광의의 의미에서 ‘학생이 개인·사회 영역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협의의 의미에서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수광 2000: 50).

(2) 중등학교 6년, 인간으로서의 학생? 학생으로서의 인간?

중등단계의 학생들은 초등 및 고등 수준의 학생들과 달리 급격한 신체적 변화, 지식의 확장, 정신적 방황의 시기를 거치며 사회, 정치, 경제 및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뜬다. 초등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중등 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 행동을 함에 있어 좀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성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중등단계의 학생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 중등학교 및 중등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공동체 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한 심정보의 연구(2002)는, 이수광의 학위논문(1999)에서 구분한 범주에 따라, 학생인권을 '교육 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교육 받을 권리는, 차별 없는 기회제공권, 교육환경의정비요구권,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하게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교육내용의 선택/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받을 권리로는, 자치권, 사생활보호의 권리, 적법 절차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 기타 인간으로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 등이다.

(3) 학생의 자율성, 누가 인정하는가?

"본인의 학습과정에서 자율성에 관한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디만, 학생, 학부모, 교사들 모두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게 매기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면담과정에서 만난 20여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을 기껏해야 50-60점(100점 만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50점보다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율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자율성, 주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틈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얼마만큼 자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낮은

자율성 평가는, 오랜 통제방식의 학교교육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와 지시를 통한 학교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길러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입시를 앞두고 염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4) 입시제도와 학생의 학습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화에 기인하는 지독한 입시경쟁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류 대학'을 꿈꾸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와 쉽게 변화할 것 같지 않은 각 대학의 서열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학습동기로 학생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이라는 말은, 얼마만큼 학생들의 총체적 성장 (신체적, 지적, 감성적, 정신적, 영적)을 가져오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얼마만큼 서열이 높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시 지도를 잘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성장기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학습이 개별 학생들의 총체적 성장과 무관하거나, 혹 그들의 총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인권, 즉 학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학습권과 한 인간으로서 부여된 천부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 교사, 학부모, 동료 학생들간의 미묘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학교

학생은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교 설립의 한 주체이다. 학생의 사회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환경, 각 개인의 사회적,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별히 교실에서 마주치는 교사, 교과내용, 동급생들과의 관계는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과의 미묘한 관계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사들은 전통적인 교수자의 권위로, 학부모들은 가부장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학교환경은 고정된 교육제도의 틀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오도하고 있다.

(6) 개별적인 인권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감각적 접근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생인권을 다루고 있는 언론 매체들의 자극적인 접근방법이다. 물론 사회적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자극적인 소재와 시각자료,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사건만을 다루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다지 큰 공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누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사가 되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인권문제는 자극적인 사건들로 시각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비가시적인 개별 주체들의 미묘한 갈등과 권력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한 접근은 본질적으로 사안의 문화역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중등학생인권의 실태

- (1) 학생인권의식의 실태
- (2) 학생인권침해실태
- (3)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태

4. 학생인권 지킴 방안

(1) 인권교육의 활성화

- 학생 자율성, 인간적 자존감 신장을 위한 교육
- 개별 학교에서 인권활동 내용 학습 학교제도 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구성
- 학생 당사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함

(2)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재교육 강화

- 학생인권이 교사들의 교권에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은 교사의 교권이 근본적으로 바탕하고 있는 토대를 밝히는 데에서 비롯
- 교사 전문성의 기초는 교과 내용과 교수 방법이여야 함 지속적인 교수방법의 개발과 교수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 전제

(3) 대학입시 개혁

- 대학교육의 전문화, 다양화
- 중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인문, 실업 및 특수 분야에 대한 자체 선발권 강화... 그러나 외교 및 과학고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보듯이 특정 대학의 특정학과를 지향하는 특수학교의 운영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임)
- 진로교육 및 상담의 정착화... 노동교육에 대한 의의 제고

(4) 학생의 학교운영 참가 보장

-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겠지만) 학교운영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 학교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보다 진전된 학생인권담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봄

중등학생 인권 실태와 인권지킴 방안 (유성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 · 장애 ·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학교관련]

1.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9.9.)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할 것을 권고

2.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2002.10.28.)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5.24.)

교원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 신분보장 ·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국 · 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9.25.)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위헌결정 당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5.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사례

6.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 · 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1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 · 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2005.3.25)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사례

8. 2003.5.21.자 03진인26 결정[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9. 2005.6.27.자 05진차204외 2건 결정[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 [1]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임
- [2]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없음
- [3]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권고

10. 2005.8.31.자 05진인1055[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조치할 것을 권고

11. 2005.9.28.자 05진차517 결정[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12. 2005.9.28.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2] 위 [1]의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

[장애 관련]**1.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결격사유와 재취득 제한규정, 초보운전자 관리 기간제도 등의 관련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경찰청에 개정 권고한 사례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4.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있어 자격검증을 거친 인력을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

3. 2002.11.18.자 02진인1402 결정[장애인 이동권침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된 경우,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4. 2004.10.12.자 04진인1093 결정[보도교설치관련 직권남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를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2.4.11.자 01진차1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1] 공무원 승진임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상 우선적인 임용 대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3] 차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언론매체를 통한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별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직을 물러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출마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6. 2002.9.9.자 02진차2 결정[장애판정시 남녀차별]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등급을 상위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가 평등권 침해의 남·여 차별임을 인정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

7. 2003.6.30.자 01진차45, 02진차58, 103, 03진차7, 47(병합) 결정[운전면허 발급시 장애인 차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면허취득시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과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중 핸들조작의 합격기준은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권고

8. 2004.10.25.자 04진차115 결정[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개선 의견표명]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9. 2004.11.8.자 04진차53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 국립대학교에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해 대학교 근무성적평정치침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0. 2004.11.22.자 03진기675, 04진차17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2004.2.16.자 03진차27 결정[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12. 2005.6.20.자 04진차207외 8건 결정[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제한]

-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13. 2005.3.28.자 04진기95 결정[공직선거관리규칙]

- 점자선거공보의 규격을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격화한 규정 개정권고

14. 2006.4.10.자 06진차4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 에서 운영하는 ○○○역, ○○○역, ○○○역은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층에 서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 역사에서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바, 장애인들이 해당역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

[기타]**1.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

- [1] 산업연수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도입 재권고 및 입법촉구
- [2]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개정
- [3]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기초자료 개발 및 번역

2.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헌가11 내지 1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2001헌가9,10)에 대한 의견(2003.3.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 사건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

3. 2002.7.31.자 01진차3 결정[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1]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 [2]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소극)
- [3] 민간기업인이 특정 색깔의 제품에 ‘살색’이라는 표기를 부착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2002.7.11.자 01진차11 결정[원격대학수료자에 대한 차별]

-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소정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생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2] [1]의 경우, 보건복지부장에게 동자격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5. 2002.5.23.자 02진차22 결정[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행위]

- [1]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 [2] 대학당국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

6. 2004.8.16.자 04진인1581 결정[입국사증 발급불허관련]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7. 2004.11.8.자 04진인3883 결정[**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회 임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하여 ‘무시험’ ‘낙하산’ 등으로 표현하고 피해자 측이 부정입학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는 언동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같은법 제59조 친절공정의무, 같은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권고한 사례

8. 2005.3.14.자 04진인3256 결정[**○○중학교의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피해 학생의 담임과 교감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과할 것, 교장은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9. 2005.5.9.자 04진인4270 결정[**스마트카드 학생증 강제 발급에 따른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등 개선조치 이행,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

10. 2003.6.30.자 03진차5 결정 [**성별에 의한 재화 차별**]

안면에 흉터가 남은 휴유장애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2003.11.17.자 02진차90, 02진차91, 02진차92, 02진차93 (병합) 결정[**보건휴가 관련 평등권 침해**]

- [1]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증빙서류 요구 등으로 사실상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특별시교육감에게 보건휴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등에게 보건휴가 사용 제한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12. 2004.6.28.자 03진차119 결정[**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관련 평등권침해**]

-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응시연령을 40세이하로 규정한 것이 연령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사례

13. 2003.9.15.자 03진차127 결정[**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 [1]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 사례

14. 2004.3.22.자 03진차75, 85, 46 결정[**기간제교원 고용차별**]

- [1] 기간제교원의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들에 대한 미

지급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15. 2003.3.31.자 02진차80, 130 결정[성적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등 침해]

- [1]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헌법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례

16. 2005.7.19.자 04진차355 결정[병력을 이유로 한 용역이용 차별]

한센인에 대한 방문정보화교육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17. 2006.2.27.자 05진차540 결정[학력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등]

고등학교 졸업후 2년이내에는 실업여자추구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선수선발규정은 여자추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팀에 들어가려는 선수에 대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18. 2006.4.10.자 06진차59 결정[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진정인은 2006학년도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랍

19. 대학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2006.3.27자)

국회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보장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 2003.5.21자 03진인26 결정[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전보 및 입학·전학시에 ‘장애인등’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진정인】 이○○

【피진정인】 ○○교육감 외 1인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교사 및 학생의 신규 임용·전보 및 입학·전학 시에 ‘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자가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담임배정이나 교실의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시설에서도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년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약간 짧은 상태인 바, 지난 26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시설이 없는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려 퇴행성관절염을 앓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학교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근무하는 ○○중학교는 2001년도에 설립된 학교로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시설을 상당부분 갖추었으나, 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

2.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자료, 위원회의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중학교는 ○○교육청이 2001년도에 설립한 공립중학교이며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등’²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003. 4. 현재 5명이다(교원 3, 학생 2).

나. 진정인은 54세의 ○○과 ○학년 교사로서 본관동의 3층에 ○○과 연구실이 있으며, 같은 층에 있는 ○학년 학생들에 대한 주당 21시간의 ○○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1층 교무실에 가기 위하여 하루 4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02. 11. ○○. ○○한방병원에서 관절염(슬통)으로 4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위 중학교는 설립 당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비교적 장애인편의시설을 잘 갖추었으나, 장애인 이동수단의 핵심시설인 승강기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6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체시설인 경사로도 없는 상태이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학교의 경우 본관동과 교사동 2개 동의 건물 57개실 중에서, 본관동 1층에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정보실, 인쇄실 및 ○○반 교실이 있고, 교사동 1층에는 식당, 보건실, 각 교과별 연구실 등이 있어 1층에 있는 교실은 ○○반 1개 교실에 불과하다.

바. 장애인화장실은 각 층별로 본관동 4개, 교사동 5개 등 9개가 있으나 남녀용 구분이 없으며, 본관동과 교사동을 연결하는 통로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경사로는 없는 상태이다.

사. ○○지역에 2002년도부터 신설된 학교는 장애자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설치학교 : ○○초등, ○○중, ○○여고, ○○고, ○○고).

3. 판 단

가. 진정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상의 ‘장애인등’에 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위 학교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시설은 비교적 설치가 잘 되어 있으나, 권장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체 경사로도 없는 상태인 바,

20)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제1호.

다. 다층 건물에서의 승강기 및 경사로는 '장애인등'에게 주요한 이동수단이며, 특히 지하 1층 지상 5층인 위 학교의 경우 보통사람들도 걸어 올라가면 힘이 들어 설사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진정한 같은 경우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승강기의 설치에 위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를 전부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이외에 실제적으로 진정한을 포함한 '장애인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 즉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1층 공간으로 교실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에의 우선적 배정 등이 함께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한이 근무하는 위 학교는 관련규정에서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및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진정한이 위 학교의 시설이용 및 이동에 있어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5. 2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

□ 2005.6.27.자 05진차204의 2건 결정[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장
 2. ○○고등학교장
 3. ○○중학교장

【주 문】

1.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공업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관행과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확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학생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침해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공업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공업고등학교는 두발단속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고, 이 때문에 올해 신입생의 80%가 머리를 강제로 잘린 적이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고등학교는 학생의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고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어, 진정인의 경우 지금까지 7차례 머리를 잘린 적이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중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으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는 바, 진정인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묶지 않으면 더 지저분하고 불편한데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업고등학교장의 주장

1) ○○공업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은 이전에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 5cm, 여학생의 경우 귀밑 3cm의 단발형이었던 것을 상당히 완화하여 2004년도부터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 상고머리형(장교형)으로 한다”, 여학생의 경우 “커트형,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발형으로 하되, 단발형

이 아닐 경우 단정히 뒤쪽으로 묶어야 하며,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의 방침에 의해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생활습관 여부에 따라 두발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학생들에게 현재의 학교 규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2) 그런데 학교 규정이 완화 및 자율화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여 현재 규정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두발과 복장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 및 학교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두발을 규정에 맞게 지켜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계속적으로 두발규정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차원과 학생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에 의해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입생의 80%가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공업고등학교는 2005. 5. 23.~2005. 5. 28. 기간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두발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나. ○○고등학교장의 주장

1) ○○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4cm이내, 뒷머리는 셔츠 깃을 덮지 않는 스포츠형으로 조발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두발검사는 전교사가 수시로 하며, 규정을 어긴 학생은 학생 스스로 규정에 맞게 자르도록 한 뒤 생활지도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두발검사시 규정을 어긴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관행은 없었으나, 간혹 교사에 따라 다른 교칙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바, 앞으로 가능한 한 학생 스스로 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

3) ○○고등학교는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2005. 5.경 대의원회의에서 학생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다. ○○중학교장의 주장

1) ○○중학교는 2004년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한 바, 두발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로 앞머리가 4cm, 여학생은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용의규정을 준수하여 머리가 단정하면 지도교사 및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쉽게 래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교과지도 및 학습활동에서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둘째, 학생들의 머리가 길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학생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른들의 용의와 행동을 모방하고자 하므로, 두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본교의 두발규정이 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본교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지도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지도는 하지 않고 스스로 단정하게 자르도록 하고 있다.

4) ○○중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복장, 용의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전반에 관련한 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가. ○○공업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공업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아래 표 <2>를 보면, “두발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66.7%를 차지하고,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95.2%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공업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 ○○공업고등학교의 두발규정(2005. 4. 7. 현재)

<p>용의복장규정 제4조(머리형태) 청결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 상고머리형(장교형)으로 한다. 2. 여학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커트형,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발형 나. 단발형이 아닐 경우 단정히 뒤쪽으로 묶어야 하며,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지 않아야 한다. 다. 머리끈, 머리띠, 머리핀의 색깔은 검은색, 검색으로 하며 장식 있으면 안된다. 3. 무스, 젤, 왁스, 스프레이, 헤어로션 등 어떠한 것도 바르지 않는다. 4. 염색, 탈색, 퍼머를 금한다. 5. 특수한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받는다.

<표 2> ○○공업고등학교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5. 6. 7.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업고등학교 실지조사시 설문조사)

설문조항	답변	응답자 수(명)			전체(%)
		1학년 (총32)	2학년 (총31)	전체 (총63)	
두발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	19	23	42	66.7 [42명/63명]
	② 다음 날까지 자르고 오도록 하여 검사한다	20	19	39	61.9 [39명/63명]
	③ 자르도록 주의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0	0	0	0
	④ 단속을 거의 안 한다	0	0	0	0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본인:37명, 친구:25명, 선후배:10명	29	31	60	95.2 [60명/63명]
	② 없다	3	0	3	4.8 [3명/63명]

2) ○○고등학교의 경우

가) ○○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아래 <표4>를 보면“두발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36.9%를 차지하고,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58.5%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등학교에서도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표 3> ○○고등학교의 두발규정(2005. 5. 6. 현재)

학생용의복장규정 제2조(두발)
① 앞머리는 4cm이내, 뒷머리는 셔츠 깃을 덮지 않는 스포츠형으로 조발한다.
② 삭발, 염색, 퍼머, 드라이어나 무스 등을 사용한 머리손질 및 가르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표4> ○○고등학교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5. 5. 30.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교 실시조사시 설문조사)

설문조항	답변	응답자 수(명)			전체(%)
		1학년 (총34)	2학년 (총31)	전체 (총65)	
두발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① 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	5	19	24	36.9 [24명/65명]
	② 다음 날까지 자르고 오도록 하여 검사한다	27	28	55	84.6 [55명/65명]
	③ 자르도록 주의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2	3	5	7.7 [5명/65명]
	④ 단속을 거의 안한다	0	0	0	0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본인:21명, 친구:31명, 선후배:19명	10	28	38	58.5 [38명/65명]
	② 없다	24	3	27	41.5 [27명/65명]

나) 단,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강제이발을 당한 적이 없고, 2005. 6. 1.~2005. 6. 3. 기간동안 두발단속이 실시되었는데 이때도 강제이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현재는 ○○고등학교의 강제이발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학교의 두발규정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여학생의 경우 “머리의 길이를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5> ○○중학교의 두발규정(2005. 4. 29. 현재)

<p>학교생활규정 제52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두발)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파마, 염색, 고대 및 드라이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머리의 길이는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 -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로 앞머리가 4cm 이내로 한다. ③ 혐오감을 주는 머리나 성인용 모양은 금하며,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다.(머리띠와 머리핀은 검정색 계통만 허용한다) ④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 젤리, 헤어크림, 헤어로션 등)사용을 금한다.</p>

4. 판 단

가. ○○공업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 3. 인정사실 기재 가.항의 내용과 같이 ○○공업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강제이발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두발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3)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강제이발은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확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써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학교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곱슬머리 등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 ○○공업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위원장 조영환 위원 최영애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김만흠 위원 나천수 위원 이해학 위원 최금숙
위원 신혜수 위원 원형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3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을 검토한 결과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주 문】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유】

I. 검토배경

1.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여 우수 학생을 선정한 후 교감과 교장이 선정된 각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해 시상학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본 위원회에 조회하였다.

2. 본 사안은 초등학교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초등학교 교육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다.

II.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및 제1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및 제16조의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III. 판단

1. 일기검사의 현황과 목적

일반적으로 일기란 개인의 하루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서 주관적 사유와 양심

을 내용으로 하는 내면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작성의 습관화, 생활반성, 쓰기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일기장을 관행적으로 검사해 왔으며, 일기검사를 통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도 이루어져왔다.

2. 기본권적 주체로서의 아동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통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내면적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과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동기는 독립적 자아를 형성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이나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내면적 양심을 가진 권리의 주체이다.

3.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의 기본권 침해여부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일기장을 검사할 경우,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일기를 작성하게 되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역을 방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이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될 것이라는 불안을 제거하기 어려워 솔직한 서술을 사전에 억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아동 자신이 공개를 목적으로 일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학교가 아동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사하고 나아가 시상할 경우 일부 아동에게는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공개를 아동 본인의 자발적 동의와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초등학교 일기검사의 교육적 목적으로 제시되는 일기작성의 습관화와 생활반성, 글짓기 능력 향상, 글씨공부 등을 살펴볼 때,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아동기에 일기쓰기를 습관화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며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교육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적 의미로서가 아닌 공개적인 속제로 인식되도록 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글짓기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기검사를 통한 교육적 효과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기검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기검사와 같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기검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사·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기를 강제적으로 쓰도록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5. 3. 25.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4

□ 2005.9.28자 05진차517 결정[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진정요지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는 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II. 피진정인 주장요지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41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는 바, 이는 다수 학생들의 남녀 구별관리 등 관리상 편리함 때문이다.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순 등 기타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III.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출석부 번호 부여 시 남녀를 구별하여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41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고 있다.

IV. 판단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다. 피진정인은 학생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성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성차별적 관행이 초래하는 폐해와 행정적 편의를 비교할 때 결코 행정적 편의가 우위일 수 없으며, 상시적인 성별 구분관리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행정적 편리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V.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8.

위원장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